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ion Women's
Human Rights Protection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임 주 리

2012년 8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상 찬

임 주 리

이 논문을 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임주리의 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2년 8월

Research on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ion Women's Human Rights Protection

Im, Ju Ri

(Supervised by Professor Dr. Kim, Sang Cha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Law

2012. 8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현황 및 실태	6
제1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현황과 실태	6
1. 국제결혼 현황	6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실태	11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실태	14
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실태	18
제2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	21
1. 국제결혼단계	21
2. 이주 및 정착단계	25
제3절 인권침해의 구체적 사례	31
1. 국제결혼 중개과정의 사례	31
2. 국제결혼 및 정착단계의 사례	33
제3장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법제의 검토	43
제1절 헌법	44
제2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46
1. 제정배경	46
2.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 및 운영실태	47
3. 결혼중개업법의 주요내용	49
4. 검토	51

제3절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52
1. 국적법	52
2. 출입국관리법	54
3. 검토	55
제4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56
1. 입법 배경	56
2. 주요내용	56
3. 검토	58
제5절 다문화가족 지원법	59
1. 제정취지 및 경위	59
2. 주요내용	60
3. 검토	62
제6절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63
1. 입법취지 및 배경	63
2. 표준조례안의 주요내용	63
3.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주요내용	64
4. 검토	65
제7절 관련법제의 한계	65
제4장 국제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제도의 쟁점과 과제	67
제1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과제	67
1. 한계	67
2. 입법적 개선방안	69
제2절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의 한계와 과제	77
1. 한계	77
2. 과제	79
제3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쟁점과 과제	81
1. 적용대상	81
2. 주무부처	82

3. 실효성 부족	83
4. 지원기간의 지나친 단기화	83
제4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쟁점과 과제	84
1. 적용대상	84
2. 프로그램적·선언적 규정	85
3. 다문화주의의 이념 반영한 종합적 다문화정책 수립	86
제5절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쟁점과 과제	88
1. 보호대상	88
2. 자문위원회 구성	89
3. 지역적 특성의 반영 미흡	89
제6절 정리	89
제7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외적인 방안	93
제5장 결론	95
참고문헌	98
ABSTRACT	10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991년 정부가 농촌되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농어촌 총각과 중국교포여성간의 성혼사업을 추진한 이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의 증가는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전체결혼의 11%가 넘어서는 일반적 결혼형태가 되고 있다.¹⁾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현상으로 당시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결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국제결혼의 대부분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결혼으로서, 2009년 외국인과의 총 혼인건수 33,300건 중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건수는 25,142건으로 77.5%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건수의 약 3배정도의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2010년말 현재 결혼이주자 181,671명 중 여성이 161,999명으로 8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처음에는 농촌총각들이 중국조선족 여성들과의 결혼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의 이주화'라는 특징과 국가간·지역간의 불균등한 경제발전이 기인하기도 하지만, 국제결혼이 수익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이윤을 얻고자하는 결혼중개업자와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하고 있고, 특히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과거에 비하여 합법적인 입국경로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국제결혼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기 때문이기도 하다.²⁾ 그러

1) 외국인과의 혼인비율은 1990년 1.2%, 2000년 3.5%, 2004년 11.2%, 2005년 13.5%, 2006년 11.7%, 2007년 10.9%, 2008년 11.0%, 2009년 10.8%, 2010년 10.5%, 2011년 9.0%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1혼인통계결과」, 2012.4).

2) 소라미, "이주여성 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이주분야 국제조약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활동가 워크샵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9.11. 한편, 한국남성의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한 원인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농촌 및 도시의 저소득층 미혼남성, 중년의 이혼남성이 국내에서 배우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한편,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등 아시아저개발국 여성

므로 이러한 현상 속에는 인종문제, 계급문제, 젠더문제 등 여러 가지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언어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낯선 생활환경, 자녀양육문제, 문화적 차이 등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단일민족주의 사상에 가부장적 통념이 더해진 독특한 사회문화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랑과 신뢰, 책임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결혼이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상업적 대량적이고 속성화된 결혼이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들고 있고, 한국남성의 사회경제적 능력부족과 고연령, 외국여성의 이주목적의 결혼과 저연령으로 인한 격차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결혼중개업체가 개입된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 여성들에게 결혼상대인 한국인 남성에게 대한 정확한 상대방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혼적 결혼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편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인신매매적 결혼중개 구조에 취약하게 노출된 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³⁾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2005년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06년 국정과제의 주요 현안으로 자리 잡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마련되었고, 그 일환으로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외국인 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하여 2007년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 3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 10월에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하여 시

중에는 가난에서 벗어나 국민소득이 높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 같은 국내의 수요와 외국의 공급이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이승우, “혼인이주여성의 지위와 법적 문제”, 「서울법학」, 제16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8, 128면).

3) 대표적인 사례로, 2007년 7월의 베트남여성 후인(19세)의 사망사건, 2003년 3월의 필리핀 국적의 알가나 레이 비비(31세)의 사망사건, 2005년 11월 남편의 폭행으로 숨진 필리핀 여성사건, 2007년 9월 베트남 여성의 씨뱀이 사건 등을 들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국제결혼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집적되어 표출된 사안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국제결혼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던져진 인권의 절규이다. 방송과 신문지상에서는 여전히 위장결혼이나 도망가는 외국 신부들의 문제가 국제결혼의 실상이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진정한 국제결혼의 폐해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편견으로부터 발생한다.

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국적 부여, 이주인과 그 가정에 대한 처우, 직업진출, 의료 서비스 등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면 현재의 제도는 매우 소극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이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배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고 있고,⁴⁾ ‘다문화 가족’을 형성하는 주요한 틀의 하나인 결혼이주 여성에 관한 지원 사업이 과연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사회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 나아가 그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극도로 상업화된 결혼절차를 통하여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결혼하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성사단계에서부터 결혼하고 이주하여 정착하고,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단계까지, 그리고 국적취득에서부터 취업문제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결혼이주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상품화된 국제결혼의 폐해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에 관하여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국제결혼과정에서의 인권문제와 한국사회 정착문제인 다문화가족에 관한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⁵⁾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관련 문제는, 혼인의 인신매매적 성격, 국적취득 전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인권침해, 원활하지 못한 언어

4) 다문화사회라 함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공생하고 있는 각국 외국인이 증가하여 다양해지는 국적 또는 인종적 사회현상, 이주인이 증가하는 본래의 문화와 다른 문화적 차이에서의 다양한 문화적 사회인식을 의미한다. 그 나라의 인구비율에 있어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문화사회라고 정의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도 외국인 증가비율을 볼 때 다문화사회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김중세, “다문화가족의 의의와 규범적 근거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37집, 한국법학회, 2010.2, 3면; 정상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26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3, 496면).

5) 대표적인 것으로서, 김재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가족법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8.3; 윤태순, “한·중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가족법의 문제 : 연변조선족의 한·중 ‘가장혼인’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8.3; 소라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 「국제결혼 이주여성, 쟁점과 전망」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2007.11; 설동훈 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2005; 한국염, “이주여성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사회학적 분석”, 「이주여성인권센터3주년기념 심포지엄자료집」, 2004 등이 있다.

소통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적응지체, 경제적 빈곤, 가정폭력, 자녀교육·양육, 인종적 차별 등이다.⁶⁾

한편, 국제사회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07년 6월, 미국무부는 국제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에서 한국의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라고 표현하며 비판하였다. 또한 2007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순수혈통주의가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유엔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07년 8월 한국정부가 제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제5차 및 제6차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 권고문에서 우리나라의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증가에 우려를 표시하며, 한국정부에 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국제조직범죄협약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도 권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중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현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현재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글로벌화로 인하여 사람·자본·정보 등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국가적·인종적·민족적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즉 2006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다문화 관련 의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2007년 5월에는 법무부가 주관이 되어 다문화주의 정책수행의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3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현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참

6) 이승우,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가족법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09.11, 217면.

여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⁷⁾ 이외에도 정부 각 부처에서는 소관법률을 기초로 다양한 다문화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컨대 법무부에서는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에도 ‘국적법’, ‘출입국관리법’과 ‘교육진흥법’을,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외에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국어기본법’,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을 근거로 다양한 다문화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다문화 관련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제를 전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그리고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중심으로 관련법률 속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겪게 되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결혼중개과정, 입국 이후 체류과정 및 국적부여, 출입국관리, 자녀의 양육권 및 모성보호, 한국사회의 적응, 의료서비스 수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등에서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쟁점을 모두 다루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중개과정 및 성혼과정, 그리고 체류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겪게 되는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7) 가족관련 업무(청소년, 아동업무 포함)는 보건사회부 등이 담당해오다가 1994년 보건복지부로 개편된 후, 2001년 신설된 여성부와 기존의 보건복지부를 오가면서 주무부처가 여러 번 바뀌고 있다. 즉, 가족관련 업무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여성부가 2005년 6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여성가족부로 옮겼고, 2008년 2월에는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되면서 다시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무부처로 된다. 2010년 3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다시 개편되면서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가족관련업무의 주무부처가 되었다.

8)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로 불리고 있다(유의정·조규범·조주은,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09, 19면).

제2장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제도 현황에 대하여, 주로 관련 법률들의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보호제도의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요약·정리한다.

본 연구는 주로 국내의 기존의 문헌자료의 연구를 통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 현황과 실태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이에는 특히 통계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의 실태조사 문헌과 연구보고서를 주로 활용하려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관련한 법령의 관계조문이나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

제1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현황과 실태

1. 국제결혼 현황

201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총수는 1,139,283명으로, 이를 유형별로 나누면 외국인근로자 558,538명(49%), 결혼이주자 181,671명(16%), 유학생 80,646명(7.1%), 외국인자녀 121,935명(10.7%), 기타외국인 106,365명(9.3%) 등이다. 이 수치는 2010년에 비하여 외국인근로자는 17,119명(3%) 감소하였으며, 결혼이주자는 14,581명(9%), 유학생은 3,324명(4%), 재외동포는 6,528명(5%), 기타외국인은 3,250명(3%), 외국인 주민자녀는 14,246명(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자와 자녀들의 증가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⁹⁾

9)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실태조사」, 2011.

2011년 총혼인 건수 329,087건 중 외국인과의 혼인은 29,762건으로 전년대비 약 5,000건이 감소하고 있으나, 외국인과의 혼인비중은 9.0%로서 2004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평균 10%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2011년 외국인과의 혼인 중 74.8%가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으로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3년과 1994년까지는 외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이 모두 3,000명대로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1995년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아내의 숫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갑자기 전년대비 3배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다시 말해서 1994년까지는 외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숫자가 비슷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외국인 아내의 숫자가 외국인 남편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외국인 아내의 숫자를 보면 2002년에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서고 2004년에는 2만5천명, 2005년에는 3만명으로 최고조에 달하였다가 2006년 이후에는 증가율이 둔화되고 2009년에는 다시 2만 5천명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08년도에 비하여 2009년도의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건수가 약 3천건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국 및 베트남 여자와의 혼인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여자와의 혼인은 2006년 방문취업제를 실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¹⁰⁾ 2011년 말 현재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건수는 22,265건이고,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건수는 7,497건으로서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건수가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건수의 약 3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단위 : 건, %)

구분	총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혼인건수	구성비	혼인건수	구성비	혼인건수	구성비
1993	402,593	6,545	1.6	3,109	47.5	3,436	52.5
1994	393,121	6,616	1.7	3,072	46.4	3,544	53.6
1995	398,484	13,494	3.4	10,365	76.8	3,129	23.2
1996	434,911	15,946	3.7	12,647	79.3	3,229	20.2
1997	388,591	12,448	3.2	9,266	74.4	3,182	25.6
1998	375,616	12,188	3.2	8,054	66.1	4,134	33.9

10) 김두년 외,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방안(연구보고서)」, 여성가족부, 2010.12, 2면.

1999	362,673	10,570	2.9	5,775	54.6	4,795	45.4
2000	332,090	11,605	3.5	6,945	59.8	4,660	40.2
2001	318,407	14,523	4.6	9,684	66.7	4,839	33.3
2002	304,877	15,202	5.0	10,698	70.4	4,504	29.6
2003	302,503	24,776	8.2	18,751	75.7	6,025	24.3
2004	308,598	34,640	11.2	25,105	72.5	9,535	27.5
2005	314,304	42,356	13.5	30,719	72.5	11,637	27.5
2006	330,634	38,759	11.7	29,665	76.5	9,094	23.5
2007	343,559	37,560	10.9	28,580	76.1	8,980	23.9
2008	327,715	36,204	11.0	28,163	77.8	8,041	22.2
2009	309,759	33,300	10.8	25,142	75.5	8,158	24.5
2010	326,104	34,235	10.5	26,274	76.7	7,961	23.3
2011	329,087	29,762	9.0	22,265	74.8	7,497	25.2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2.

2011년도 전체혼인건수는 329,087명인데 그 중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이 22,265건으로 전체혼인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농림어업종사자의 혼인건수는 5,355건으로 전체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건수의 24.0%만을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76.0%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추정되어 이제는 국제결혼이 농촌총각의 전유물이 아니고 전체 사회에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읍면지역에서는 농림어업종사자의 38.6%가 외국인 아내와 혼인하고 있어 아직도 읍면지역에서는 농림어업종사자의 3쌍 중 1쌍이 외국인 아내와 혼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표 2> 농어촌지역(읍면지역)과 도시지역(동지역)의 혼인 (단위 : 건 %)

구분	혼인건수 (A)	한국남자+외국여자 혼인		농림어업종사자 남자 혼인		농림어업종사자 남자+외국여자	
		건수(B)	구성비 (B/A)	건수(C)	구성비 (C/A)	건수(D)	구성비 (D/C)
계	329,087	22,265	6.7	5,355	1.7	1,559	37.1
동지역	266,713	15,709	5.8	1,395	0.5	267	23.7
읍면지역	54,441	6,074	11.1	3,959	8.2	1,291	38.6

출처 : 통계청, 「2011 통계연보(혼인통계)」, 2012.

11) 김두년 외, 상계 연구보고서, 3면.

2011년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혼인건수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34.3%), 중국(33.9%), 필리핀(9.3%) 등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7.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국적별 외국여자와 혼인 (단위 : 건,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구성비
계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04	22,265	100
중국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9,623	7,549	33.9
베트남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9,623	7,636	34.3
필리핀	838	928	947	980	1,117	1,497	1,857	1,643	1,906	2,072	9.3
일본	690	844	809	883	1,045	1,206	1,162	1,140	1,193	1,124	5.0
캄보디아	2	19	72	157	394	1,804	659	851	1,205	961	4.3
태국	327	345	324	266	271	524	633	496	438	354	1.6
미국	267	322	341	285	331	376	344	416	428	507	2.3
몽골	194	320	504	561	594	745	521	386	326	266	1.2
우즈베키스탄	183	328	247	332	314	351	492	365	317	324	1.5
네팔	21	22	32	16	33	82	159	316	202	211	0.9
러시아	236	297	315	234	203	152	110	139	119	125	0.6
기타	443	577	564	601	669	749	741	777	894	1,136	5.1

출처 : 통계청, 「2011 통계연보(혼인통계)」, 2012.

2004년의 경우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혼인 중 초혼비율이 53.5%, 재혼비율이 46.5%로서 비슷한 수준까지 간 적도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초혼비율 60%대와 재혼비율 30%대를 유지하여 여전히 재혼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점차 국제결혼에서도 초혼이 보편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의 혼인종류별 구성비 (단위 : %, 배)

혼인종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남자+ 초혼(A)	65.5	58.3	53.5	55.7	63.6	62.8	64.7	62.9	65.3	66.2

외국여자	재혼(B)	34.5	41.7	46.5	44.3	36.4	37.2	35.3	37.1	34.7	33.8
	비(A/B)	1.9	1.4	1.2	1.3	1.8	1.7	1.8	1.7	1.8	1.9

출처 : 통계청, 「2011년 통계연보(혼인통계)」, 2012.

2010년 한국인 부부의 혼인연령차는 2.2세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는 12.1세로 한국인 부부의 연령차에 비하여 약 10세정도 더 많다. 이는 한국인 남자의 경우에는 혼인기회를 놓친 만혼이거나 재혼임에 반하여 외국인 신부의 경우에는 20대초반의 미혼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과도한 연령차는 혼인생활의 파탄이나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²⁾

<표 5> 부부의 평균혼인 연령차

(단위 : 세)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남자+한국여자	2.6	2.6	2.6	2.6	2.5	2.4	2.4	2.3	2.2	2.2
한국남자+외국여자	7.5	7.9	8.3	8.4	9.1	11.6	11.5	11.8	11.1	12.1

출처 : 통계청, 「2010년 통계연보(혼인통계)」, 2011.

국제결혼 비율은 농어촌지역이 더 높아 결혼하는 사람 3명 중 1명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데, 2010년의 경우 거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9,855명(27.4%)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 41,123명(22.6%), 인천시 11,344명(6.2%)으로 국제결혼 이주자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결혼이주여성 161,999명으로 결혼이주자의 89%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의 이주화’¹³⁾ 현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표 6> 지역별 국제결혼이주자 거주분포

12) 김두년 외, 상계 연구보고서, 6면.

13) ‘여성의 이주화’는 남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동행하는 일보다는 일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남아시아에서도 급격하게 증가는 하고 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이주가 여성을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기도 하지만 인권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처럼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는 사례는 거의 드문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장명선, “결혼이민자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 (한국비교공법학회·국가인권위원회 공동세미나발표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0.11, 98면; Inter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A Global Perspective, IOM, 22-24면).

구분	결혼이주자		증감수	증감율	2009년 분포	2010년 분포	2010년 결혼이 주여성	2010년 분포비율
	2009년	2010년						
전국	167,090	181,671	22,705	8.7	100	100	161,999	100
서울특별시	39,275	41,123	1,398	3.5	23.5	22.6	33,515	20.7
부산광역시	7,526	7,875	349	4.6	4.5	4.3	7,308	4.5
대구광역시	4,965	5,321	356	7.2	2.9	2.9	4,884	3.0
인천광역시	10,486	11,344	858	8.2	6.3	6.2	10,138	6.3
광주광역시	3,267	3,538	271	8.3	1.9	1.9	3,352	2.1
대전광역시	3,623	3,900	277	7.6	2.2	2.1	3,587	2.2
울산광역시	2,950	3,416	466	15.8	1.8	1.9	3,206	2.0
경기도	44,760	49,855	5,095	11.4	26.8	27.4	43,436	26.8
강원도	4,188	4,504	316	7.5	2.5	2.5	4,329	2.7
충청북도	4,927	5,664	737	15.0	2.9	3.1	5,364	3.3
충청남도	8,003	8,781	778	9.7	4.8	4.8	8,377	5.2
전라북도	6,743	7,051	308	4.6	4.0	3.9	6,832	4.2
전라남도	7,290	7,945	655	9.0	4.4	4.4	7,277	4.5
경상북도	8,057	8,906	849	10.5	4.8	4.9	8,588	5.3
경상남도	9,586	10,834	1,248	13.0	5.7	6.0	10,287	6.4
제주특별자치도	1,444	1,614	170	11.8	0.9	0.9	1,519	0.9

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실태조사」, 2009-2010을 참고하여 재분석.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실태

(1) 결혼 경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보고서¹⁴⁾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자가 현 배우자를 만난 경로는 ‘결혼중개업체(25.1%)’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가족, 친척의 소개(23.3%)’, ‘친구, 동료의 소개(23.1%)’, ‘스스로 배우자를 만남(18.2%)’, ‘종교기관을 통하여(6.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6년 여성가족부의 조사보고서에서는 친척의 소개(45.7%), 스스로(20%), 결혼중개업체(17.7%), 종교기관(14.3%) 순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결혼중개업이 많이 성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⁵⁾ 여기에서 ‘친구, 동료의 소개’로 나타난

14) 보건복지부,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보고서」, 2009, 291면.

15) 서울시의 설문조사의 경우, 결혼중개업체가 29.8%, 친구나 친지의 소개 28.4%, 종교단체 13.4%, 부모형제 10.9% 등으로 나타나 전국보다 더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명선,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결혼중개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비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⁶⁾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캄보디아(84.1%)나 베트남(66.4%)의 경우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결혼의 동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의 동기에 대하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배우자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하여(65.0%)’, ‘모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15.7%)’,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12.2%)’, ‘한국에서 취직하기 위하여(7.1%)’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¹⁷⁾ 첫 번째 동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제적인 이유로 볼 수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동기는 경제적 동기가 35%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출신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출신과 캄보디아 출신 여성의 경우 모국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결혼했다는 응답이 각각 32.9%, 41.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¹⁸⁾

2010년의 다른 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동기에 관하여,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29.7%), 현재의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29.0%), 외국에 살고 싶어서(14.5%), 가족·친척의 권유로(6.2%), 종교 때문(6.2%),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4.1%), 본국을 떠나고 싶어서(3.4%)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¹⁹⁾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앞의 조사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인배우자의 결혼 동기는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38.1%)’, ‘배우자 출신국가의 사람과 결혼한 친구나 아는 사람의 권유로(30.3%)’, ‘배우자의 출신국

「서울시 다문화가족실태 및 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연구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8, 121-122면.

16) 보건복지부, 전계 실태조사보고서, 292면. 한편 2010년의 다른 조사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체의 소개(57.6%), 한국거주 친지의 소개(13.2%), 종교단체의 소개(10.4%), 본국거주 친지의 소개(9.7%), 배우자 친지의 소개(2.8%)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결혼하는 비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김두년 외, 전계 연구보고서, 124면).

17) 보건복지부, 상계 실태조사보고서, 293면.

18) 장명선, 전계 연구보고서, 126-127면.

19) 김두년 외, 전계 연구보고서, 124면.

가 사람들이 순종적이고 부모에게 잘할 것 같아서(24.5%)', '배우자의 출신국가 사람들의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해서(16.8%)', '종교적인 이유로(14.8%)', '결혼중개 업체의 권유로(10.3%)' 순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여성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가정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결혼하는 비율이 높다고 분석할 수 있다.²⁰⁾

이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동기는 명백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부부갈등이 야기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더구나 언어장벽의 문제, 문화적 차이의 문제 등으로 서로를 이해하거나 소통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부부갈등 내지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심지어 가정폭력, 더 나아가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 연령차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평균연령은 33.3세, 한국인 남성의 평균연령은 43.2세로 평균 10세 정도의 연령차를 보이고 있다.²¹⁾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24세 이하의 결혼이주여성의 45.4%가 40세 이상의 남편과 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실태조사결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 11세의 연령차이를 보였는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연령차이는 11-20세로 전체의 41.1%에 해당하고 있으며, 6-10세 차이는 24.6%, 1-5세 차이는 15.1%로 각각 나타나고 있고, 21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8.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²⁾ 출신국적별로 보면 캄보디아가 17.1세, 베트남이 16.4세 정도의 높은 연령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출신의 경우 2.9세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²³⁾ 배우자 간의 연령차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특히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부부간의 세대차는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결혼이주여성이 그 가정의 생계

20) 보건복지부, 전계 실태조사보고서, 294면.

21) 보건복지부, 상계 실태조사보고서, 295면.

22) 장명선, 전계 연구보고서, 128면.

23) 장명선, 상계 연구보고서, 128-130면.

를 책임지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배우자간의 너무 큰 연령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²⁴⁾

(4) 경제생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고, 100만원 미만도 21.3%로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신국적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필리핀(28.7%), 중국조선족(24.7%), 캄보디아(23.7%), 베트남(22.5%), 태국(21.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⁵⁾ 이로 인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돈을 벌기 위하여 취업을 원하고 있다. 취업상태를 보면 국제결혼 이주자의 40%정도가 취업하고 있지만, 이중 남성의 74%가 취업하고 있는데 반하여 여성은 37%만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취업하지 못한 여성의 경우 일자리 알선(29.6%), 자녀보육 양육지원(22.9%), 한국어교육(18.4%)에 대한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44%가 모국에서 들었던 사전정보와 현실이 너무 달라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이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57.5%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제력을 지닌 절대빈곤 하에 있는 남성들과 혼인하여,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다는 여성도 15.5%에 달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0.5%에 불과했으며, 이들 중 23.6%는 의료보장체계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 임신과 출산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관계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가운데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사람은 14.5%로,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 56.8%에 비하면 1/4에 불과한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²⁶⁾

24) 동지 : 장명선, 전계논문, 101면.

25) 보건복지부, 전계 실태조사보고서, 296면.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실태

(1) 가정폭력의 형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제결혼중개업체나 종교단체를 통하여 결혼할 때에는, 결혼비용이나 선물비 등 결혼부대비용을 모두 한국남성이 부담하고 있다. 이 때 문인지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대하기보다는 돈을 주고 사온 소유물같이 취급한다고 한다. “너는 내가 돈주고 사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거나 “말을 안 들으려면 나가라”는 등의 인격모독적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성적 학대와 더불어 성생활에 불만을 보이면 바람기가 있다고 모독한다고 한다.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성폭력 비율이 23.5%에 이르고 있다.²⁷⁾ 이는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과 더불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이다.²⁸⁾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남편의 가정폭력 사례는 이주여성단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945명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2005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언어폭력 31%, 협박 18.4%, 물건던짐 23.7%, 세계 밀기 13.9%, 손발로 구타 13.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⁹⁾

2007년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가정폭력 중 가장 많은 유형인 부부폭력의 경우, 다문화가정이 47.7%로 한국인 가정 40.3%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정에서는 신체적 폭력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신체적 폭력 정도는 한국인 가정보다 심하여 중한 폭력

26) 보건복지부, 상계 실태조사보고서, 130면 이하.

27) 설동훈 외, 전계 연구보고서, 124면.

28) 김상찬·김유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제43집, 한국법학회, 2011.8, 323면.

29) 설동훈 외, 전계 연구보고서, 124면. 또한, 2002년 광주시여성발전센터가 광주와 전남지역의 국제결혼이주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7%가 폭행, 18%가 폭언, 12%가 경제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2006. 8. 31. 경향신문, 2006. 8. 31. 사설참조).

정도가 한국인가정보다 3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경제적 폭력도 한국인 가정보다 3배정도 높게 나타나 이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도 폭력의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다문화가정의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비율은 38.8%,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17.8%, 상호폭력은 8.9%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국인 가정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비율이 33.1%,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27.1%, 상호폭력 19.9%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이 한국인 자정보다 더 가부장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원인을 보면 문화적 차이, 경제적 문제, 결혼에 대한 기대의 차이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³⁰⁾

<표 7> 부부간 폭력유형별 발생률 (단위 : %)

구분	전체 폭력 발생률	부부간 폭력유형별 발생률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경한폭력	중한폭력	경한+중한폭력			
다문화 가정	47.7	35.6	5.3	16.9	16.9	12.2	20.7	15.7
한국인 가정	40.3	33.1	11.1	4.8	11.6	4.1	19.6	10.5

출처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2007.

<표 8> 다문화가정과 전국 부부폭력발생률 비교 (단위 : %, 명)

구분		전체 폭력 발생률	폭력유형별 발생률						분석 대상 수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³¹⁾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경한폭력	중한폭력	경한+중한폭력				
다문화 가정	부부폭력	47.7	35.6	5.3	16.9	16.9	12.2	20.7	15.7	38
	남성의 아내폭력	38.8	31.9	5.3	10.4	10.4	12.2	15.5	14.4	23
	여성의 남편폭력	17.8	12.6	-	9.7	9.7	-	5.2	4.5	27
	상호폭력	8.9	8.9	-	3.2	3.2	-	-	3.2	38
한국 전체	부부폭력	40.3	33.1	11.1	4.8	11.6	4.1	19.6	10.5	6,561
	남성의 아내폭력	33.1	26.4	7.7	4.5	9.4	3.2	14.3	9.5	5,976
	여성의	27.1	22.5	5.3	2.6	6.4	1.9	13.8	3.6	4,114

30) 장명선, 전계논문, 102면.

	남편폭력									
	상호폭력	19.9	15.9	1.9	2.3	4.2	1.0	8.5	2.6	3,529

출처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2007.

이러한 가정폭력은 남편뿐만 아니라 시집식구 모두에 의하여 행사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핵가족 형태보다는 대가족 위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³²⁾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가 시댁에서 함께 사는 경우가 도시지역에서는 14%에 불과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45%에 달해, 현실적으로 노부모를 봉양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시어머니나 시누이 등으로부터 각종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³³⁾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58%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베트남여성들의 9% 정도는 부부간 대화가 거의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언어소통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부싸움은 거의 하지 않지만,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생활습관 등의 차이가 커 언어적 의사소통이 되더라도 생활상에 심각한 문제는 치유되지 않으며, 특히 식생활 등의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가족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³⁴⁾

(2) 엄격한 생활통제

한국의 남편과 가족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일정기간이 지나 국적을 취득하면 도망갈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취직을 못하게 하는 등 생활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신원보증은 남편이 하도록 되어 있고, 비자연장

31) 신체적 폭력 중 경한폭력은 손바닥으로 배우자의 뺨을 때리는 행위와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이며, 중한폭력은 배우자의 어깨나 목을 꼭 움켜잡는 행위,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 배우자를 칼 등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배우자를 물건(책,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32)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제 38집 제2호, 한국사회학회, 2004, 189-219면; 문옥희, “외국인 여성 실태조사 및 사회지지체계 조사결과 분석내용”,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광주가정폭력상담소, 2004. 12, 47-65면.

33) 보건복지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 2006. 9., 123면 이하.

34) 한진수,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제39권 제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6, 195-243면.

의 경우나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신청에도 남편이 동행해야 가능하기 때문에(국적법 제6조 제2항), 이를 무기로 남편이 부인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거나(12.7%), 외출을 금지시키거나(11.2%), 의처증 증세를 보이거나(8.2%), 본국으로 송금을 못하도록 하거나(7.1%), 심지어 신분증을 빼앗고 주지 않는 경우(7.0%)도 발생되고 있다.³⁵⁾

(3) 가정폭력에의 대응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식에 있어서도 30%정도가 “그냥 참고 산다”고 응답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8% 정도로 그 비율이 매우 낮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20%),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14%), 신고해도 경찰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13%), 체류자격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1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⁶⁾ 폭력을 당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언어장벽 때문에 신고할 수 없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경찰에 신고했을 때 끝까지 처벌을 원할 경우 이혼을 생각해야 하고, 이혼할 경우 국적취득이나 자녀의 문제 등에 있어서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처하므로 대부분 참게 되는 것이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식을 빼앗길까봐’(42.1%),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10.5%), 모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10.5%),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희망 때문(10.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⁷⁾.

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실태

최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4쌍 중 1쌍이 이혼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을 정

35) 설동훈 외, 전계 연구보고서, 127면.

36) 보건복지부, 전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태조사」, 123-130면.

37) 창원여성의전화, 「다문화가정의 정책적 복지욕구조사」, 2006 참조.

도이다. 또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최근3년간 상담결과를 토대로 이혼문제를 분석해 보면, 법률상담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이혼과 그에 따른 자녀양육권, 양육비 및 위자료문제, 재혼 등 여러 범주가 있으나, 이혼에 관한 것이 65.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⁸⁾

2011년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이혼건수는 11,495건으로, 전년대비 2.6%감소한 수치로, 총 이혼건수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2004년 이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도 급격히 증가한 추세이나, 2009년부터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감소추세로 돌아섰다가 2011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이전에는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 간의 이혼건수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건수보다 많았으나, 2005년부터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건수가 많아졌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은 2004년 전년대비 64%, 2006년 47.1%, 2007년 35.2% 등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8년에는 32.4%로 낮아졌다가 2009년에는 4.5%로 그 증가율이 크게 둔화하였으며, 2010년에는 -3.4%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도에는 다시 3.7%상승하고 있다.

<표 9> 외국인과의 이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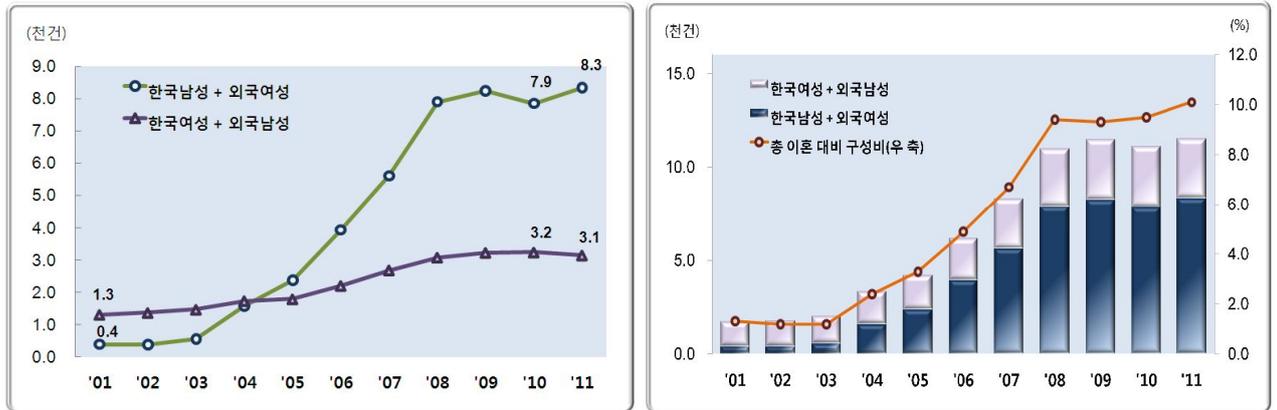
(단위 : 건,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이혼건수	134,608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116,858	114,284
외국인과의 이혼 (총 이혼 중 비중)	1,694 (1.3)	1,744 (1.2)	2,012 (1.2)	3,300 (2.4)	4,171 (3.3)	6,136 (4.9)	8,294 (6.7)	10,980 (9.4)	11,473 (9.3)	11,088 (9.5)	11,495 (10.1)
증 감	196	50	268	1,288	871	1,965	2,158	2,686	493	-385	407
증 감 륜	13.1	3.0	15.4	64.0	26.4	47.1	35.2	32.4	4.5	-3.4	3.7
한국남성+외국여성	387	380	547	1,567	2,382	3,933	5,609	7,901	8,246	7,852	8,349
증 감 륜	56.7	-1.8	43.9	186.5	52	65.1	42.6	40.9	4.4	-4.8	6.3
한국여성+외국남성	1,307	1,364	1,465	1,733	1,789	2,203	2,685	3,079	3,227	3,236	3,146
증 감 륜	4.5	4.4	7.4	18.3	3.2	23.1	21.9	14.7	4.8	0.3	-2.8

출처, 통계청, 「2011년 이혼통계결과」, 통계청, 2012.

38) <http://www.wm1366.org/images/intro/img-bus01.gif>.

<그림 1>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출처, 통계청, 「2011년 이혼통계결과」, 통계청, 2012.

한국 남성과 이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59.5%), 베트남(19.6%), 필리핀(3.8%) 순이며, 상위 3개국 이 차지하는 비중이 82.9%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평균동거기간은 3.2년으로 매우 짧은 반면,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과의 평균동거기간은 6.0년으로 비교적 길게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다소 증가하고 있는 수치이지만, 여전히 한국인 부부 평균 동거기간 14.0년에 비하여보면 매우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이혼부부의 평균 동거기간

구 분	(단위 : 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체	10.9	11.1	11.3	11.9	12.0	12.0	12.1	12.3	12.8	12.9	13.0
한국 남성+외국 여성	2.9	2.7	2.2	2.3	2.1	2.1	2.2	2.5	2.7	3.1	3.2
한국 여성+외국 남성	5.5	5.3	5.3	5.3	6.0	5.7	5.3	5.9	5.6	5.7	6.0
한국 남성+한국 여성	11.0	11.2	11.4	12.0	12.2	12.3	12.5	13.0	13.8	13.8	14.0

출처 : 통계청, 「2010년 이혼통계결과」, 통계청, 2011.

국제결혼이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혼한 국제결혼 이주자의 가족 중 87.4%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외국인과의 이혼*	1,498	1,694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11,245
미성년자녀 있음	195	223	215	265	362	406	504	736	1,058	1,074	1,209
1명	133	166	153	187	254	287	351	532	763	825	943
2명	51	49	50	69	95	103	126	188	251	216	233
3명 이상	11	8	12	9	13	16	27	16	44	33	33
미성년자녀 없음	1,227	1,379	1,445	1,643	2,807	3,617	5,503	7,800	9,785	10,326	9,823
구 성 비 (%)											
외국인과의 이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성년자녀 있음	13.0	13.2	12.3	13.2	11.0	9.7	8.2	8.5	9.4	9.2	10.8
1명	8.9	9.8	8.8	9.3	7.7	6.9	5.7	6.1	6.8	7.1	8.4
2명	3.4	2.9	2.9	3.4	2.9	2.5	2.1	2.2	2.2	1.8	2.1
3명 이상	0.7	0.5	0.7	0.4	0.4	0.4	0.4	0.2	0.4	0.3	0.3
미성년자녀 없음	81.9	81.4	82.9	81.7	85.1	86.7	89.7	90.0	86.9	88.3	87.4

* 미상 포함

출처 : 통계청, 「2010년 이혼통계결과」, 통계청, 2011.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부부갈등 42.36%, 가정폭력 24.25%, 고부갈등 6.32%, 실망 3.4%, 경제적 무능 3.11%, 거짓정보 2.55%, 친정지원 0.38%, 성폭력 0.19%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부갈등의 유형은 의사소통 24.65%, 성격차이 17.75%, 문화차이 9.41%, 이혼요구 9.16%, 성생활 8.92%, 알코올 중독 7.6%, 방임 5.05%, 경제문제 3.6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⁹⁾ 바꾸어 말하면 이혼사유로는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문제로 인하여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갈등이 심화된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다.

39) 한편, 2009년의 보건복지부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혼사유로 성격차이(29.4%), 경제적 무능력(19%), 외도(13.2%), 학대와 폭력(12.9%)로 조사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전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보고서」, 355면).

제2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매매혼적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결혼생활 중에도 부부폭력 등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하여, 국제결혼 단계에서의 인권침해, 그리고 이주 및 정착단계에서의 인권침해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1. 국제결혼 단계

각국의 개발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빚어낸 ‘빈곤의 여성화’로 인하여 아시아에서 이른바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2000년대 초반부터 두드러져, 가난한 제3세계 여성들은 가사노동이나 공장노동, 성산업, 그리고 국제결혼을 통하여 이주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성 이주가 발생하게 된다.

국제결혼 이주의 경우 제3세계 여성들과 한국 남성간의 국제결혼은 이미 전통적 개념의 결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상업화된 결혼시장을 통하여 알선되며,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 가족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심한 경우 매매혼의 성격까지 갖고 있으며 사기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⁰⁾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국 식구들의 생계를 위하여 다달이 집에 일정액을 송금한다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부모가 사전 또는 사후에 일시불로 일정 금액을 받고 결혼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3세계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국제결혼은 이주와 인신매매 경계선 사이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결혼으로 인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하여 마치 ‘돈주고 사온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하며, 이는 곧 결혼생활 중의 인권억압으로 이어지고 잦은 구타와 외출금지, 의처증으로 인한 학대, 경제를 위한 노동의 강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구조

40) 한국염,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 인권보호의 과제”, 「정책간담회주제발표자료」, 국회도서관, 2006.12, 15면.

를 형성한다.

이러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에 대하여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비난받아왔다. 유엔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될 소지가 있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정책들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기도 하였다.⁴¹⁾ 그러나 한국남성이 중개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고 국제결혼 자체가 남성의 욕구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중개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침해는 결혼 후에도 이들에 대한 가정폭력과 관련된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1) 중개업체의 인권침해적·성차별적 광고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인신매매적 성격의 문제이다. 매매혼적 결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내걸고 있는 현수막이나 인터넷상의 결혼중개 사이트, 그리고 맞선과정에서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⁴²⁾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보다 많은 한국 남성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지면광고, 인터넷홈페이지 광고 등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은 성 차별적·인종 차별적인 광고를 서슴지 않고 있다.⁴³⁾ 위와 같은 현수막은 재혼과 장애라는 결혼시장에서

41) 유엔성차별철폐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을 규제하는 법이 마련된 것은 알지만 착취와 인신매매될 소지가 있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결혼에 가정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었다. 동 위원회는 외국인 여성들이 국제결혼중개업자, 인신매매자 및 배우자에 의한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가정책들과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유엔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에서의 성과와 과제」, 2009, 221면).

42)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이유로는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와 순종적인 기질의 여성을 선호하는 지역 정서,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미 대만과 일본을 상대로 하여 발달되어 있는 베트남의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을 활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크고 작은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자, 브로커들의 활약을 무시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결혼중개업체는 2010년 12월말 현재 국내 929개, 국제 1,411개, 총 2,340개로 나타나고 있다(김두년 외, 전계 연구보고서, 7면).

43) 처음에는 ‘베트남 여성과 아름다운 인연맺기’라는 문구로 시작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혼, 재혼 상관없음’, ‘나이 상관없음’, ‘장애인 환영’,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만남에서 결혼까지 7일’, ‘베트남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신부보증제’, ‘후불제’, ‘엄가제공’ ‘도망가면 다시 책임지고 주선함’, ‘베트남 솟

주변화된 신체들, 위계화된 글로벌 체제하에서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주변성, 글로벌 결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여성의 몸, 한국 사회에 깊게 내재된 순결 이데올로기, 결혼이라는 틀 내에서 허용될 수 없는 매매혼적 성적 결합이라는 현재 국제결혼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잘 말해주고 있다.⁴⁴⁾

(2) 중개업체의 불평등하고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국제결혼중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평등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불균형하고, 부정확하고, 때때로 허위인 경우도 있다. 불과 7년 전만 하더라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신부로 최종 선택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남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한다.⁴⁵⁾ 또한 2005년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업체를 통한 이주여성의 44%가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남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응답하고 있다.⁴⁶⁾

또한 통역서비스의 미비로 인해 결혼당사자들이 결혼 과정에서 전문적인 통역자의 조력을 충분히 받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심각한 ‘정보의 부족’을 야기하며, 불충분한 정보는 결혼 당사자들이 결혼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나 착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결혼 후 심각한 오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⁴⁷⁾

‘치녀’ 등 노골적으로 특정국가의 여성을 상품화하고 인종차별하는 내용을 버젓이 내걸고 있다(한국염, 전계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 인권보호의 과제”, 16면)

44) 김상찬·김유정, 전계논문, 328면.

45) 예컨대, 필리핀 마닐라의 한국인 운영 결혼정보업체는 남편을 ‘30대 후반의 엔지니어’라고 소개했지만, 결혼하고 한국에 와보니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엔지니어라는 남편은 트럭 야채상이었고, 나이는 결혼 전 들은 것보다 10살이나 많았다고 한다(조선일보, 2005. 3. 22. 자).

46) 2010년 조사에서는 직업(69.9%), 나이(67.7%)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질병(20.4%), 재산소득(28%), 가족관계(36.6%), 혼인경력(37.6%), 신체조건(37.6%)등을 포함한 나머지 대부분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제공받은 이들 정보 중 신체조건(47.4%), 직업 45.3%, 나이(40.3%), 재산소득(38.5%), 혼인경력(37.1%), 학력(36.3%), 질병(31.6%) 등이 사실과 달랐다고 응답하고 있다(김두년 외, 전계 연구보고서, 130면).

47) 농촌남성의 경우 “한국에서 농사지를 때에는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여자는 일할 필요가 없다. 시부모가 있지만 분가해서 따로 살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일자리가 없거나 일용노동자가 “건설업에 종사한다”는 등 과대포장하고 현지에서 돈을 잘 쓰며 선물도 사주고, 매달 가족에게 송금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여 정말로 돈이 많은 줄 알고 결혼하게 되는데, 실제로 한국에 와서 보면 전혀 다른 실상에 속았다거나 사기당했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한국염, 전계 “이주의 여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율적인 배우자 결정권의 침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대량·속성 결혼중개시스템으로 인하여 자율적인 배우자 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사진이나 우편주문, 동영상사진, 패키지형 맞선을 통하여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맞선을 진행하며, ‘일대일 맞선’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대체로 결혼중개업체에서 외국여성을 소개하는 절차는 인터넷 등에서 여성들의 사진이나 결혼중개업체가 가지고 있는 사진자료를 보도록 하고 남성이 좋다는 의사를 밝히면 일정을 종하여 한국에서 출국한 다음날 맞선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다음날 한국영사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결혼식과 피로연을 행한다고 한다. 45일 후 2차로 출국하여 서류에 사인하고 입국하면 2개월 후쯤 신부가 한국에 들어온다.⁴⁸⁾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명의 남성이 몇 시간 안에 적게는 20-30명, 많게는 200-300명의 여성 중에 한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맞선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이윤의 추구’라는 상업화된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의 이윤 추구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결혼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⁴⁹⁾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결혼 중개시스템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속성으로 배우자 선택이 강제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 맞선을 보고 여성을 선택한 후 다음날 오후에 결혼식을 하고 바로 합방을 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다. 혼인신고 전 호텔에서 함께 잠을 자는 것은 성매매에 해당하지만 암묵적으로 합방이 필수적인 코스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중개업자들은 한국에서 신혼여행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강요된 성적 결합(합방)’을 통하여 남성과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 결정을 반복할 수 없도록 하는 강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⁵⁰⁾

성화 한 유형,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사회학적 분석” 참조).

48) 한국염, 전계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 인권보호의 과제”, 16면.

49) 이러한 대량맞선에 대하여 “미인대회식 대량맞선 및 단기속성의 성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소라미, 전계 “이주여성 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149면).

50) 김상찬·김유정, 전계논문, 329면.

(4) 인신매매적 중개구조

최근까지도 국제결혼 중개과정은 조직적인 연결망에 의해 여성을 모집, 기숙, 관리, 통제하고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국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맞선을 준비하는 기간 뿐 아니라 결혼 후 입국까지 여성들은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외출이 제한되며,⁵¹⁾ 이 기간 동안 사용한 생활비는 빚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부채 예속의 상황은 여성이 중간에 맞선을 포기하거나 경쟁률이 높은 맞선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강제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결혼상대자가 싫더라도 자의에 반하여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남성과 결혼 한 여성들은 입국을 포기하거나 입국 후 2-6개월 이내에 집을 나오면 ‘지참금’뿐 아니라 추가로 한국 중개업체에게 변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들은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가게 된다.⁵²⁾

2. 이주 및 정착단계

(1) 신분상의 불안

1) 불안정한 체류권

한국남성과 결혼한 결혼 이주여성은 현행 국적법 제6조의 혼인에 기한 간이 귀화요건에 따라 기본적으로 국내 2년이라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귀화신청자격이 부여된다(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귀화신청 후 최종 귀화허가 통지까지는 통상 1년 반에서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자는 실제로 약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장기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으로부터 사증(비자)과 외국

51) 베트남의 경우 현지 중개업체들도 맞선이 끝난 후 출국 전까지 여성의 이탈을 막고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장소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혼인신고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건강진단서 대신에 여성의 처녀성을 증명하거나 출산경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산부인과 확인검사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한국염, 전제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 인권보호의 과제”, 17면).

52) 김상찬·김유정, 전제논문, 330면.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소라미, “정부의 탈법적인 국제결혼중개방지를 위한 정책검토”,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정책 다시보기 토론회 자료집」, 2006.6. 참조

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결혼이주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거주자격(F-2)비자가 부여된다. 거주비자에 부여되는 제1회 체류기간은 1년이며 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체류연장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는다. 만약 체류기간 내에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초과 체류상태가 되면 출입국으로부터 단속과 강제 추방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⁵³⁾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2006년까지 약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남편들이 국적취득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는 여성이 국적 취득 후 도망갈 것을 염려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증금 3,000만원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적취득을 무기로 배우자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국제결혼 부부가 낳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국적취득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⁵⁴⁾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남편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등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심지어 어떤 남편은 부인을 폭행하며 나가라고 집에서 내쫓아 놓고 가출신고를 하여 부인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1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청권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이 비자문제를 무기로 이주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2년 후 취득가능한 국적도 남편이 보증을 서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국적법 조항 역시 남편의 이주여성에 대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요컨대 대부분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다.⁵⁵⁾

그러던 중, 2005년 9월, 이주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국제결혼 이주자의 체류에 관한 관련법인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①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국민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⁵⁶⁾ 이혼이나 별거시 거주(F-2)자격으로 체류허가와 취업이 가능하다. ②별거의 귀책사유가 양측에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라도 자녀양육 등 가족 부양시에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53) 소라미, 전계 “이주여성 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153면.

54) 한국염, 전계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 인권보호의 과제”, 20면.

55) 한국염, 상계논문, 20면.

56) 2009년 5월 국적업무관리지침 일부개정에 의하여 이주여성들이 귀책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주여성 관련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변경, 취업이 허용된다. ③당초 국내체류 5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던 영주자격(F-5)을 2년 거주자로 변경하였다. ④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 별도 체류허가 절차 없이 국민에 준하여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하였다.

2) 국적취득곤란

2004년 1월 개정 국적법 제6조 제2항에서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⁵⁷⁾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간이귀화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귀화허가신청서와 함께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천만원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후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한다.⁵⁸⁾ 문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국적취득에 있어 한국인인 배우자가 재산증명 및 재직증명에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 이 요건은 국적 취득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합법적인 국내 체류 여부는 여전히 한국인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본적으로 혼인이주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자녀양육권을 향유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간이귀화의 요건을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동 규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셋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어서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귀

57) 국적법 제6조 제2항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58)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책사유가 있었음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한국말이 서툰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리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여성이 스스로 그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비록 이주여성 관련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로 하는 지침이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어느정도 실효적인 입증자료로 기능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⁵⁹⁾

넷째, 거주자격(F-2)을 유지하면서 국내의 혼인동거기간이 2년 이상이면 원래 국적을 유지하면서 체류기간도 제한받지 않는 영주자격(F-5)으로 체류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신청서류가 배우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증명,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재산관계의 입증 서류 외에, 별도의 신원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⁶⁰⁾ 주로 농어촌의 저소득 빈곤층에서 혼인이주여성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규정은 현실적으로 영주신청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또는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한국국적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평등권과 국적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차별

한국사회는 100만 이주민 시대를 맞이하여,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가족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문화주의 전통이 없었고, 순수혈통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편견과 차별은 언론을 통하여 피상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정이 불쌍하다거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는 시각부터 심지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씨받이’로 오해하거나, 이주여성은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했다는 ‘선입관에 기초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취업에 있어서도,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어려워하

59) 동지 : 전제철, “다문화 법교육의 가능성”, 「법과 인권교육연구」 제5권 제1호, 법과인권교육학회, 2010.6, 209-233면.

60) [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04/imm_0403/imm_040304/1175799_36465.jsp#title\(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04/imm_0403/imm_040304/1175799_36465.jsp#title(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홈페이지)) 참고.

고 있다. 취업에서의 어려움을 묻는 설문에,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고 하거나 (21.1%), 일이 고되고 힘에 부침(15.0%), 임금수준이 너무 낮음(5.5%), 외국인에 대한 편견, 차별(12.3%) 등의 응답을 하고 있다.⁶¹⁾ 노동시간, 노동의 종류, 임금 수준 등의 문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⁶²⁾

(3) 사회적응 문제

특정종교를 통하여 결혼하는 이주여성은 한국어연수기회를 갖는데 비하여, 중국동포를 제외한 다른 국적을 가진 이주여성들은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한국에 이주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은 물론, 심지어 가족 간에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혼 후에도 남편 등에 의하여 바깥출입을 차단되는 경우에는 한국말을 배우기가 어려워진다. 그런데도 한국에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왜 한국말을 못하느냐고 구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이웃과의 교류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아이를 맞기거나 집보기 부탁(74.8%), 경조사 참석(57%), 생활용품 빌리기(62.4%), 급한 돈 빌리기(68.8%), 어려운 일 의논(62.0%) 등에서 거의 교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³⁾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이웃과 서로 소통하며 살지 못하고 사실상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적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⁶⁴⁾

(4) 모성보호 및 자녀교육 문제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에는 성지식의 부족, 언어장벽 등으로 인하여 피임·임신·출산·산후조리·육아 등에 대하여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종교적 이유로 피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피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임신하는 경우도 있

61) 설동훈 외, 전계 연구보고서, 95면.

62) 김상찬·김유정, 전계논문, 326면.

63) 설동훈 외, 전계 연구보고서, 152면.

64) 김상찬·김유정, 전계논문, 326면.

으며, 심지어 본인이 임신여부를 알지 못하고 짐작은 하고 있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남편과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하여 임신한 채 홀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이면 복지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복지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없어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⁶⁵⁾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은 대부분 첫 임신이다. 그 결과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언어장벽이 있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기본상식을 습득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출산 이후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육아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질병의 초기에 진료를 받지 못해 질병을 악화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겪게 되는 심각한 어려움 중의 하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문제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바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로 인하여 자녀의 언어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2010년말 현재 초·중등학교에 재학하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총 30,040명으로, 2009년 대비 21.4% 증가한 수치이며, 학교급별 비율은 초등학교 78.6%, 중학교 16.0%, 고등학교 5.4%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 22.3%, 서울 12.9%, 전남 9.6%, 경남 7.2%, 충남 7.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⁶⁶⁾

<표 12> 국제결혼 가정 자녀 현황

(단위 : 명, %)

65) 설동훈 외, 진계 연구보고서, 225면.

66)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자녀현황(2010년 초·중·고)”, 2011.2, 1면.

구분	초등		중등		고등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6	6,795	-	924	-	279	-	7,998	-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39.6
2009	20,632	30.5	2,987	35.0	1,126	48.0	24,745	31.8
2010	23,602	14.4	4,814	61.2	1,624	44.2	30,040	21.4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자녀현황」, 2011.

어머니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부족은 자녀의 언어발달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해서도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자녀의 외모나 피부색이 다른 경우에는 집단따돌림과 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없게 된다.⁶⁷⁾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건전하게 형성하면서 주위의 따돌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상담하며 다양한 지원을 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이다.⁶⁸⁾

제3절 인권침해의 구체적 사례

1. 국제결혼 중개과정의 사례

(1) 인신매매적 결혼중개

사례1)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Y씨(20세)는 남편이 부자라는 말을 믿고 안락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 와 보니 남편이 사는 집이 너무 형편없고 남편은 간질환자에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었다. 남편은 50세였고 농사짓고 있었으며 90세 된 노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남편이 주기적으로 발

67) 국제결혼 가정의 17.6%가 집단따돌림을 경험하고 있으며, 따돌림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어서’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전계 국제 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 2006.9, 115면).

68) 김상찬·김유정, 전계논문, 327면.

작하는 것을 보고 중개업체에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중개업체는 Y씨의 결혼을 위해 시아버지가 진 빚을 갚기 위하여 동네의 다른 총각과 결혼하고 돈을 받아서 갚으면 어떻겠느냐고 하였고 시아버지는 이를 받아들여 동네 다른 사람의 집에 시집을 보내면서 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일의 성사가 잘되지 않아 Y씨를 다시 남편에게 돌려보내려고 하였다. Y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강력히 저항하여 결국 보호시설로 보내게 되었다.⁶⁹⁾

사례2)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A씨(21세)는 베트남에서 결혼 후 바로 입국하였다. 입국하자마자 임신을 하였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50세)이 따져 묻는 과정에서 결혼 전 합숙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자신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며 협의이혼서에 도장을 찍도록 강제하여 협의이혼하고는 여성을 내쫓았다. 여성은 중개업체를 찾아갔지만 중개업체에서는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이니 알 수 없으며,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오히려 남편이 자신들에게 결혼비용을 반환해달라고 하니 자기들에게 손해라고 하면서 오히려 돈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다.⁷⁰⁾

(2) 불평등하고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사례3)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안나(22)씨는 마닐라 소재 한국인이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결혼하였는데, 당시 결혼정보업체는 남편의 직업에 대하여 ‘30대 후반의 엔지니어’라고 소개했다. 다음날 결혼식 올리고 한 달 뒤 한국에 왔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엔지니어라는 남편은 트럭 야채상이었고, 나이는 결혼 전 들은 것보다 10살이나 많았다. 결혼중개업체는 한국에서는 농업이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말했고, 결혼하면 남편과 단둘이서 살면서 취업도 할 수 있고 친정에 돈

69) 권미주,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이 가지는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법률적 과제”, 「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 2010. 5, 47면.

70) 권미주, 상계논문, 47면.

을 보낼 수 있다고 달콤한 이야기를 속삭이기도 하였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⁷¹⁾

사례4)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인 O(21세)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중개업체에 등록하고 남편과 선을 보았는데 남편은 사람들과 달리 말이 거의 없었다. 남편이 본인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하여 너무 말이 없어 이상하다고 중개업체에 이야기하였지만 중개업체에서 돌아온 대답은 남편이 원래 말이 없고 내성적이며 지금 심하게 수줍음을 타서 그런 것뿐이라고 하였다. 단지 내성적인 뿐이지 한국에 가면 집도 있고 회사도 다니는데 직장도 탄탄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혼하고 한국에 들어와 보니 남편은 심한 언어장애에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다. O씨는 결혼 1개월 만에 협의이혼을 원했다.⁷²⁾

사례5)

태국출신 이주여성 H씨(26세)는 결혼하고 한국에 들어와 보니 결혼정보업체에서 남편에 대하여 말해 주었던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었다. 본국에서 소개받을 때에는 남편이 사무직 직장인이며, 아파트를 전세로 살고 있으며 경제적 여유가 있으므로 결혼을 하면 친정에 송금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된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남편이 사는 집은 허름한 연립주택에 월세였으며, 집안 살림도 모두 낡아빠진 것들이었다. 게다가 남편이 버는 돈이 적기 때문에 친정에 돈을 보내줄 수도 없다고 하여서 업체의 설명만 믿고 본국에서 이미 빚을 얻어 결혼을 한 H씨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한다.⁷³⁾

사례6)

결혼 6개월의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20세)은 남편(43세)과 결혼할 때 아파트가 있고 큰 식당을 경영한다고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한국으로 와서 보니까 집이

71) 조선일보 2005. 3. 22. 사회면.

72) 권미주, 진계논문, 49면.

73)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사례 모음집, 2008, 129면.

없어서 조그만 민속주점을 하면서 그곳에서 주거하고 있었다. 오후부터 주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보통 새벽 3-4시까지 장사를 해야 했다. 주방에서 요리하고 설거지 하고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해야 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일을 해 본적도 없다. 남편은 부인에게 일을 시키려면 아이를 가지면 안되니까 산부인과에 가서 루프 시술을 시켰다. 너무 힘들어서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⁷⁴⁾

2. 국제결혼 유지 및 정착단계의 사례

(1) 가정폭력

1) 남편의 협박과 폭력

사례7)

결혼 8년째인 중국 조선족 이주여성(46세)의 남편(61세)은 경비 일을 하는데 남편은 “너랑 결혼한다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돈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화를 내었다. “좋은 소리도 한 두번이지 그럼 왜 결혼했느냐”고 말하면 어디서 말대꾸냐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다음날 깨어보면 온 몸이나 바닥이 피투성이였다. 그 때가 결혼 한지 한 달만이였다. 그다음부터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 후에도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면 당장 중국으로 보내겠다는 협박을 한다.⁷⁵⁾

사례8)

결혼 5년째인 중국 출신 이주여성(43세)은 남편(58세)과 결혼 했는데, 남편은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하면서 여자는 딱 예, 아니오 두 마디만 하라고 강요했고 처음 6개월 동안 그랬는데 바보라고 해서 말대꾸를 했더니 성질이 더럽다고 하면서 결혼할 때 친정부모에게 500만원 주었고 결혼비용으로 1000만원 썼으니 다 내놓고 가라고 했다. 우리 부모님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말대꾸를 한

74) 김혜여성의집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례집, 2009, 58면.

75) 상계 상담사례집, 60면.

다고 때리기 시작하였다. 언젠가는 16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린다고 남편이 밀기도 하였다. 이제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되었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남편이 하는 말에 고분고분 하며 살던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 가고 싶어도 남편이 돈을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니 갈 방법이 없다.⁷⁶⁾

2) 시부모와의 갈등

사례9)

중국하얼빈 출신의 여성 C씨(32세)는 중국에 있는 12살 된 아들의 양육비를 부담해 주기로 하고 한국남성과 결혼했다. 마을 이장의 소개로 여성회관에 한국말을 배우러 다녔는데, 시어머니는 바쁘게 무슨 공부냐고 하면서 가지 못하게 하였다. 1년 후 아들을 낳았고 여성회관에 가지 못하게 되니까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씩 집으로 와서 한국어공부를 하였는데, 선생님에게 음료수를 대접하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냉장고에 테이프로 붙이고 창고도 열쇠로 잠가버렸다. 결국 시어머니와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가출하게 되었다.⁷⁷⁾

사례10)

한국에 온지 1년 정도 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26세)는 어느 날 시누이가 돼지고기를 사들고 찾아와 “이 고기를 볶아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먹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임신한 자기에게 먹으라고 준 고기인줄 알고 혼자 조금 볶아먹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 며칠 후 시누이가 와서 이 사실을 알고 남편과 시부모에게 얘기했는데, 시어머니는 너만 먹으려고 했느냐며 욕설과 함께 폭력을 가했다. 결국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⁷⁸⁾

(2) 신분상의 위협과 폭력

76) 상계 상담사례집, 64면..

77)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팀 상담사례집, 2008, 35면.

78) 김오열, “다문화 지역사회와 농촌이주여성 더불어 살아가기-홍성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상담사례 발표자료」, 홍성YMCA, 2010.9, 21면.

사례11)

49세의 한국남편과 결혼한 결혼 5년차의 태국여성(29세)은 결혼 후 아이까지 낳아 잘살아보려고 밭이나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남편은 일은 하지 않고 화투나 카드(노름)만 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태국여성이 일하고 돈을 받는 날이면 그 돈을 달라고 하면서 주지 않으면 때리기도 하였다. 결혼 후 5년이 되어도 남편은 국적취득신청을 미루기만 하고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의 노름 때문에 빚은 점점 늘어가기만 하고 아이 때문에 이혼도 쉽지 않다고 하고 있다.⁷⁹⁾

(3) 경제적 폭력

사례12)

홍성으로 시집온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26세)은 남편이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자 어쩔 수 없이 일하려고 결심하였다. 이 여성은 베트남에서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고,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지만 막상 직장을 구하고자 했을 때 적당한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미용실 보조도 기능이 있어야 했고, 식당 서빙도 어눌한 한국말 발음에 매번 퇴짜를 맞았다. 직업소개나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기관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장시간 노동에 힘든 김공장에 나가게 되었다. 겨우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다.⁸⁰⁾

사례13)

전라도 섬지역으로 시집을 온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K(20세)의 남편은 70세였다. 남편은 염전일을 했는데, K가 시집을 오자 자기는 이제 몸이 힘들어 더 이상 일을 못하겠으니 K가 일을 하고 번 돈으로 생활을 하자고 하였다. K가 일하여 한달에 월급으로 80만원을 받아서 그중에 40만원은 본국으로 송금하고 40만

79) 전계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팀 상담사례집, 40면.

80) 김오열, 전계논문, 22면.

원은 자신들의 생활비로 쓰자고 하였으나 남편은 본국에 보내는 돈이 너무 많으며 본국에 20만원만 보내고 20만원은 자신의 용돈으로 쓰겠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힘든 노동을 견디지 못한 K는 집을 나와서 결혼중개업체에 가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였다. 중개업체에서는 K를 식당에 취직시켜주고는 남편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니 K가 버는 돈을 본인들이 가지겠다고 하며 월급을 받아 챙겼다. 식당주인이 이를 알고는 지역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다.⁸¹⁾

사례14)

결혼 7년차 중국 출신 이주여성(35세)는 한국인 남편(48세)과 결혼했는데, 남편은 아내하고 의논도 없이 직장에서 퇴직하고 무직으로 살아가고 있다. 퇴직금도 어디에 썼는지 말해주지 않고 물어보면 너는 몰라도 된다하고만 대답한다. 남편이 퇴직한 후 꾸준히 식당에 다니면서 생활을 했는데 남편은 계속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에 퇴근하고 집 청소, 빨래 등 온갖 집안일을 혼자 다했다. 언젠가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 빵과 우유를 급하게 먹었더니 체했는지 여러 번 토하고 아팠는데도 일을 계속하였다. 그래도 남편은 수고한다고 한마디 하지 않는다. 식당에서 일해서 90만원을 받는데 남편이 돈을 다 관리하고 있다. 더 억울한 건 중국에 있는 딸에게 학원비로 1년에 100만원씩 송금한다. 그런데 남편은 송금할 때마다 잔소리를 하며 싸우게 된다. 적금 통장도 남편이 빼앗아갔고, 술만 먹으면 돈 벌어서 도망갈 거라고 늘 의심하고 달달 볶는다. 나를 종으로 생각한다.⁸²⁾

(4) 언어소통으로 인한 갈등

사례15)

1997년에 태안으로 시집온 결혼 12년차의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35세)은 결혼 후 처음에는 기술자인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가면 늦게 들어오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못하고 지날 때도 많았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81) 권미주, 전개논문, 50면.

82) 전개 김해여성의집전화 부실 가정폭력상담소 면접상담사례집, 59면.

더 답답하고, 시어머니가 된장국을 끓이라고 한 것을 버리라고 한 줄 알고 퍼다 놓은 된장을 모두 버린 적도 있었다. 지금처럼 여성회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부지도 않았고, 외국인 여성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답답하고 힘들었다.⁸³⁾

(5) 자녀문제에서 오는 갈등

사례16)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여성(25세)은 시어머니가 너를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온 것은 아들을 낳기 위한 것이니까 아들을 못 낳으면 안된다고 하는 말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반복한다. 본인은 아들보다 딸이 훨씬 좋지만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말에 많이 놀라고 만약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될까 무서워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다. 그녀는 혹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

(5) 아내로서 불인정(남편의 외도)

사례17)

결혼 4년차인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29세)의 남편은 신문배달을 하는 남편(40세)이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면서 필리핀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계속 늦게 들어오더니 급기야 외박도 자주하였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신문보급소의 지사장이 이혼녀인데 그 여자랑 바람이 안 것이었고, 주민등록도 아예 그 여자에게 옮겨 놓은 상태였다. 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만 남편의 가출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의 가정을 흔들고 있다.⁸⁴⁾

사례18)

결혼 2년차인 중국인 출신 이주여성(29세)은 남편(40세)이 아이들 핑계로 전혀

83) 전계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팀 상담사례집, 42면.

84) 전계 김해여성의집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면접상담사례집, 60면.

와 계속 만나는 문제 때문에 결혼생활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혼한지 2년이 되는 전처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핑계로 새벽 한 두시에 전화하고, 수시로 돈을 달라고 하였다. 전부인과 이혼하면서 빌라도 주었다고 하고, 이혼하면서 진 빚 300만원을 갚아주면 안 만나겠다고 해서 식당에서 일해서 받은 돈으로 갚아주기 까지 했는데 다시 만나고...남편은 술집 여자랑도 언제든지 같이 살수 있다고 말한다.⁸⁵⁾

사례19)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24세)이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국인 부부에 의해 ‘대리모’로 유용되어 두 아이를 출산과 동시에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빼앗기고 ‘축출 이혼’을 당한 이른바 ‘현대판 씨받이 사건’이 보도되었다.⁸⁶⁾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하기 1달 전에 부인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베트남 여성과 이혼한지 1달도 채 안되어 다시 전부인과 재혼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그들이 베트남 여성을 대리모로 유용하고자 사전 의도하였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6) 의처증

사례20)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24세)은 남편의 잦은 폭력에 눈이 실명위기에 처해 있다. 남편은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는데, 하필이면 맞아서 부은 눈 부위를 또 때린다는 것이다. 남편은 왜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느냐며 때리고, 시장에만 갔다 와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다가 이제야 오느냐며 폭력을 행사한다. 남편은 젊은 아내가 자신 몰래 도망갈 것이라는 의처증을 가지고 있는데, 폭력이 무서워 야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⁸⁷⁾

85) 상계 면접상담사례집, 61면.

86) 프레시안 2008년 5월 22일자 보도. “현대판 씨받이 ... 베트남 여성은 속수무책”.

87) 김오열, 전개논문, 23면.

사례21)

결혼 2년차인 중국 출신 이주여성(33세)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무직인 남편은 식당에서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어느 놈하고 붙어먹다가 지금 왔느냐”면서 욕을 퍼붓고 손에 집히는 대로 온몸을 때렸다. 그리고 담뱃불로 사타구니를 지지고 “이렇게 해야지 다른 놈이랑 못붙어 먹는다”고 했다. 손님이 많고 식당이 바빠서 피곤할 때에는 지쳐서 성관계하기 싫다고 하면 “어느 놈이랑 붙어 먹었냐”면서 욕하고 때렸다. 제일 기분이 나쁜 것은 성관계할 때마다 “사창가에 가서 하면 5만원이 드는데 너를 500만원 주고 사왔으니 100번은 해야 본전이다”라고 하는 말이었다. 그 말이 제일 기분 나쁘고 비참했다. 내가 그런 여자들 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여자들은 돈이라도 받고 맞지도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여성은 국적을 취득한 후 바로 이혼하였다.⁸⁸⁾

(7) 성폭력(아내 강간)

사례22)

2008년 9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21세)은 광주의 남편(53세)과 결혼했다. 결혼 당시 남편은 이혼하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혼되지 않은 상태였다. 태안에서 결혼생활을 했는데, 남편은 출근할 때 밖에 못나가게 하고 베트남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못하게 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성관계를 요구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싫다고 하면 주먹으로 때리고 그래도 안되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와 자고 왔다. 왜 그러느냐고 말하면 네가 웬 참견이냐고 하면서 또 때리고, 술을 먹고 온 날은 더 심하게 폭력을 일삼았고, 침대 밑에 칼을 숨겨놓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칼을 휘둘렀다. 외국인등록을 하자고 해도 미루기만 하였다.⁸⁹⁾

사례23)

88) 전계 김해여성의집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면접상담사례집, 65면.

89) 전계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팀 상담사례집, 44면.

결혼 5년차인 중국 출신 이주여성(32세)는 남편(47세)가 술만 마시면 때린다고 한다. 그리고는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다. 하루는 남편이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왔는데 갑자기 따귀를 때렸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때리고 코에서 피가 나고 유리창도 깨져서 집도 엉망인데 “도망가선 안 돼” 하면서 갑자기 성관계를 시작하였다. 억지로 싫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내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무시하는 건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른다. 멍이든 아픈 부위에 손이 닿을 때마다 비명소리가 나올 것 같은 아픔을 참고 있어야 했다.⁹⁰⁾

(8) 아내 살해

사례24)

2007년 7월 충청남도 천안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후인(19세)이 술취한 남편(46세, 일용근로자)에 의해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채 사체로 발견되었다. 결혼 중개업체 소개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이주여성을 기다린 것은 18만원짜리 지하 월세방에서 감금과 다름없는 생활과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이었다. 범인으로 검거된 남편은 수사과정에서 “1000만원을 들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자꾸 돌아간다고 해 찾김에 때렸다.”라고 진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대전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하여 형이 확정되었다.⁹¹⁾

사례25)

2003년 3월 25일 새벽1시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알가나 레이비(32)는 서울 동대문구이문동 자신의 집에서 한국인 남편의 폭력을 피해 달아나다 베란다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⁹²⁾

그녀는 병든 아버지(78)와 동생 4명을 돌본 ‘소녀가장’이었는데, 23세에 남편(43)을 만나 결혼하고 아들(8)도 낳았으나, 남편은 그녀가 한국풍습에 익숙하지

90) 전계 김해여성의집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면접상담사례집, 66면.

91) 대전고법 2008.1.23. 선고 2007노425 판결.

92) 한겨레신문 2003년 3월 26일자 14면; 나효우, “내딸은 살해당했다”, 한겨레21, 2003.5.8, 76면.

않은데다 자꾸 필리핀으로 돈을 부친다는 게 이유로 때리기 시작하였으나 한국과 필리핀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그녀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숨진 그녀의 턱 밑에는 칼에 베어 생긴 5cm의 상처가 발견되기도 했다. 아들이 ‘왜 엄마를 때리느냐’고 울면 아이까지 때렸다”고 말한다.

사례26)

2008년 2월 6일 9시경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트란 티 란(22세)’이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1월 호치민에서 결혼을 한 후 한국으로 온 이 여성은 함께 생활해보니 말도 안통하고 살림도 못한다는 이유로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한 시어머니의 제안에 본인이 동의를 하고 합의 이혼을 신청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사망과 연이어 경산경찰서에서는 유가족과 아무런 상의 없이 화장을 하고 유골을 베트남으로 보내졌다. 또한 경찰은 입국한지 한 달 만에 의문의 추락사로 사망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억울함을 밝히지 않고 덮어버렸다.

이러한 일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며, 과거 문제시 될 때 마다 수차례 결혼정보회사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반되는 결과는 개인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사례27)

2010년 7월 8일 부산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닷티황옥(20)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지 8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인 남편 장씨(47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말다툼 끝에 흥기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은 지난 8년 동안 우울증과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57차례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결혼 중개 업체들이 돈만 내면 무조건 성사시키려고 하고, 대상자의 병력을 검증하지 않았던 점이 비극의 원인 이었다. 국제 결혼한 신부 살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편은 1심에서 정신분열증 등을 이유로 12년 형을 선고받았다.⁹³⁾

93) 연합뉴스 2010. 7. 9.

사례28)

베트남 출신 황모 신부(23세) 살해사건

2010년 5월 24일 오전 1시경, 경북 청도에서 베트남 출신 황모여성(23세)이 남편(37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 숨진 황 씨는 지난해 2009년 4월 임씨와 결혼했으며, 고작 19일 전 남자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임씨가 평소 아내와 갈등이 있었는데, 이날도 말다툼 하다 흉기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며 남편 임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2010년 07월 1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 둘 수 없다며 국제결혼을 억제 하겠다고 밝혔다.⁹⁴⁾

사례29)

2010년 3월 18일 오후 9시경 강원 춘천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C씨(당시 25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방에 불을 질러 잠든 C씨를 숨지게 하고 화재 사고로 위장, 역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등)로 남편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 3월 C씨와 결혼한 A씨는 부인 명의로 된 생명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건 당일 C씨에게 수면제(졸피뎴)를 먹인 뒤 방 안의 전기히터에 이불 등을 밀착해 화재를 유발,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부인 C씨 명의로 6개 보험사의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또 범행 2개월 전인 지난해 1월엔 자신의 아파트에 미리 화재보험을 드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⁹⁵⁾

94) 한겨레신문 2011.5.21, 사회면.

95) 문화일보 2011. 3. 23, 13면.

제3장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법제의 검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현황을 요약해 보면,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하여 국제결혼이 인신매매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확하거나 때로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한 인권침해,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인권침해,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관한 관련법제의 부재 또는 미비로 인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에의 적응지체, 경제적 빈곤, 가정폭력, 자녀교육·양육상의 차별, 인종적 차별 등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통계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민자의 사회통합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한다. ①외국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이 매년 증가하여 국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②국제결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외국여성 출신국가와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⁹⁶⁾ ③결혼 이후에도 여성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사회와 가족관계에서의 부적응,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④정부정책이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구성원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방안은 여성결혼 이민자 및 그 가족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⁹⁷⁾ 다문화가족

96) 인권침해적인 대규모·속성국제결혼 중개시스템으로 인하여 외국여성과 한국남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양국가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외국여성 출신국가와의 마찰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위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령 2005년 1월 17일, 필리핀 여성과 국제결혼 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한국인 3명과 결혼정보회사 직원 2명 등이 필리핀 범죄수사국에 의하여 ‘우편주 문신부금지법’ 및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97) 권영호·지성우·강현철,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정관련법에 대한 입법평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9.9, 67면.

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①배우자 신원보증 해지신청에 대한 관리강화, ②혼인과 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강화, ③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입증요건 당화, ④ 사실혼 부모에서 출생한 자녀 및 그의 외국인 모(부 포함)에 대한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 검토라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⁹⁸⁾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2007년 5월, 외국인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어서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하여 2007년 12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2006년 10월에 ‘거주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법으로서, ①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⁹⁹⁾ 그리고 국제결혼 관련 국제협약인 UN여성차별철폐협약, UN인신매매방지 의정서, 국적법, 국제사법 등이 있으며, 국제결혼 관련민사법(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제결혼 관련 형사법(형법상 인신매매관련 조항)이 있고, ②국제결혼 중개업 관련법으로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③국제결혼 출입국 및 정착단계의 법으로서,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위 내지 인권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관련법 중에서 제2장에서 검토한 인권침해 실태의 각 유형, 즉 국제결혼단계, 이주단계 및 정착단계에서의 기본법적 지위 내지 기능을 가지는 법률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그 전제로서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기본이념 및 가치, 기본권조항으로부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필요성과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98)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여성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30면 이하 참조.

9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인권관련법의 적용범위를 국내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제1절 헌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신분보장을 비롯한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지에 대해서 통설은 외국인도 기본권의 성질상 인간의 권리로 특정되는 것에 한하여 그 기본권이 보장되며 그 밖의 기본권은 상호주의에 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⁰⁰⁾ 헌법재판소도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이 인정된다고 한다.¹⁰¹⁾ 최근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규정인 헌법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그 제10조 내지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¹⁰²⁾

또한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비추어 누구든지 국제결혼을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00) 학설은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정하는 부정설(박일경, “기본적 인권과 그 주체”, 「고시연구」 1974.10, 12-17면), 기본적 인권은 권리의 성질상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긍정설(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382면; 계희열, 「헌법학」, 박영사, 2000, 63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316면 등), 한국인에게 보장되어 있는 이상 당연히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질상 허용되는 한 준용되어야 한다는 준용설(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237면) 등이 있다.

101) 헌재결 1994.12.29, 93헌마120.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적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한다(헌재결 2007.8.30, 2004헌마670).

102) 헌재결 2001.11.29, 99헌마494.

이를 보장하고 있는 본 규정에 따라서 국제결혼을 하려는 국민이 국제결혼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결국 외국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평등권, 전통적인 자유권,¹⁰³⁾ 경제적 기본권 중 소비자권, 일정한 기본권의 보장과 결부된 청구권적 기본권, 환경권과 건강권과 같은 일정한 사회적 기본권 등을 향유할 수 있다.¹⁰⁴⁾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제결혼단계, 이주단계, 정착단계를 규율하는 관련 규범들은 이러한 헌법의 이념 및 기본권 보장규범에 따라 제정·집행되어야 한다.

제2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정배경

우리나라의 결혼중개업은 종래 신고제를 취하고 있었으나 1998.2. 건강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었다.¹⁰⁵⁾ 이와 같이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 1998년 당시 700여개 업체에 불과했던 중개업체는 2005년에 2,00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고,¹⁰⁶⁾ 2010년에는 2,300여개로 증가하였다.

결혼중개업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을 통하여 유입되는 여성결혼 이주자 수가 늘어나면서 국제결혼에서 인신매매성 결혼, 위장결혼, 사기결혼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었고, 2006년 4월 정부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103) 전통적인 자유권은 그 대부분이 초국가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국가의 안전 등을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출입국에 관해서는 그에 관한 특별한 조약이 없는 한 입국을 허가할 의무가 없지만, 일단 입국을 허가한 외국인에게는 출국의 자유가 보장된다(권영성, 전계서, 317면).

104) 권영성, 상계서, 317-319면.

105) 우리나라에서 결혼중개업은 1969년 1월 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1973년에 허가제, 1993년에 신고제로 되었다가 1999년부터 자유업으로 완화되었다(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전남표, 「국제결혼학개론」, 도서출판 문예림, 2008, 29면 이하 참조)

106) 결혼중개업의 등록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중개업체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2005년 11월 현재 한국전화번호부에 등록되어 있는 결혼중개업체는 총 2,210개였다고 한다(한건수설동훈,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연구(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2006.1, 7면).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하여, 이 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12월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200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¹⁰⁷⁾

2.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 및 운영실태

(1) 현황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되어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한 이후부터 결혼중개업체 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국제결혼 중개업체수는 2008년 922개 업체, 2009년 1,215개 업체, 2010년 1,411개 업체가 등록하여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2년 사이에 1.5배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0년 12월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체로 등록된 업체수 1,411개 업체 중 서울이 242개 업체로 전체의 17.2%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 224개 업체(15.8%), 경남 111개 업체(7.9%), 부산 87개 업체(6.2%) 순으로 많은 업체가 등록하고 있다. 2008년도 대비 2010년에 국제결혼중개업체수가 특히 두드러지게 증가한 지역은 광주(증가율 194.4%), 대구(증가율 191.5%), 경기(증가율 175.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⁸⁾

(2) 운영실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형태는 91%가 개인업체이며 법인형태는 9%에 불과하다. 업체의 대부분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사장이 커플매니저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79%에 해당하는 영세업체이다. 중개업체의 평균 커플매니저 수는 2.19명으로, 커플매니저 수가 6명 이상

107) 그 후 이 법이 시행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제2차, 제3차 개정을 통하여 국제결혼 중개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몇 가지 부분이 개정되어 2010.11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2차개정은 2010.1.18.에, 3차개정은 2010.5.17.에 있었으며, 3차개정에서 논의되었으나,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살펴보면, 중개업자 결격사유 완화, 사후보수교육 실시, 양벌규정 완화, 예치금 예치제외,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 체결 등 계약형태 다양화, 신고포상제도, 단체맞선금지조항, 국제결혼 회수제한 등이다(장명선, 전계논문, 117면).

10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 2011.1.

인 업체는 5.7%에 불과하며 평균자본금 규모는 4,047만원 정도로 매우 영세하다. 이러한 중개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업체의 이익을 위한 불건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⁰⁹⁾

월평균 상담건수는 18.23건이며, 전체 응답업체의 75.6%가 월평균 10건 이하로 나타나 운영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⁰⁾ 즉 연평균 국제결혼 성사건수는 2008년 8.81건이며 1건도 없는 업체도 16.9%나 되어 운영 실적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 매출액 현황은 4,808만원이며 연매출액 1,000만원 이하가 36.9%로 가장 많다.¹¹¹⁾ 따라서 중개업체는 운영비 마련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여 결혼하는 비율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중개경비는 국가별호 달라 우즈베키스탄 1,326만원, 태국 1,266만원, 캄보디아 1,130만원, 네팔 1,120만원 순으로 대부분이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적지 않은 경비 모두를 한국남성이 부담하므로 처음부터 인권침해적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¹¹²⁾

국제결혼중개업자 중 현재 결혼중개업이 본업인 비율은 86.8%에 이르고 있어 결혼중개행위만을 통하여 돈을 벌어야 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내에 본사 이외에 지사를 운영하는가에 대하여 86.4%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해외지사도 56.7%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³⁾ 커플메니저 선발시 동종경력을 인정하나 특정조건 없이 선발하거나 일반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수적으로 회원들에게 제공해야 할 사항으로는 혼인상태, 재산, 소득, 가족관

109) 최은실 외,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효율화방안 마련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확보를 위한 소비실태연구」 (연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2009.8. 11면.

110) 다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업체의 한달 평균 결혼상담 건수가 2건 이하인 업체도 33.3%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두년 외, 전계 연구보고서, 102면).

111) 최은실 외, 전계 연구보고서, 15면.

112) 최은실 외, 상계 연구보고서, 15면.

113) 해외지사를 두고 있는 업체는 주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에 두고 있으며,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에는 80%이상의 업체가 해외지사 내지 현지제휴업체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두년 외, 전계 연구보고서, 103면)

계 등의 순으로,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이 87%로 가장 많고,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81.8%, 재직증명서 67.6%, 소득관련증명서 57.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⁴⁾ 그러나 제공된 정보에 대한 검증방법은 구두로 재확인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6.5%, 재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19.7% 등으로 나타나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¹¹⁵⁾

국제결혼 중개시 계약서는 86.4%가 작성하고 있는데, 계약서 기재내용을 보면 위약금 지급명기비율은 82.0%, 회원정보유출 금지규정 69.1%, 맞선주선 규정 61.8%, 일정한 계약기간과 맞선 주선회수를 제한하는 경우 19.8%, 맞선 주선회수만 제한하는 규정 8.8%로 나타나고 있다.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 중에는 혼인관계가 94.1%로 가장 많으며, 나이 93.8%, 학력 92.6%, 직업 91.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⁶⁾

한국남성이 외국으로 출국해서 맞선, 결혼 등의 절차를 거치고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까지 소요되는 평균기일은 87.68일로 나타났다.

3. 결혼중개업법의 주요내용

결혼중개업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다.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기준을 정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3조, 제4조).¹¹⁷⁾

둘째,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결혼중

114) 2010년 여성가족부의 보고서에서도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병역증명서, 재직 또는 영농확인증명서는 70% 이상 제출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자격증, 면허증 등은 2-20%정도만 제출되고 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절반정도가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두년 외, 전계 연구보고서, 104면).

115) 최은실 외, 전계 연구보고서, 20면.

116) 장명선, 전계논문, 108-109면.

117)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2.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3. 건축물대장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 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자본금 등에 관한 규정은 없어서 영세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업을 운영하거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임원 중에 앞의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등이다(제6조).

셋째, 결혼중개업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겸업이나 명의대여 금지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 등은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으며(제7조), 명의나 상호, 신고필증,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제9조). ②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및 설명의무 :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내용은 수수료, 회비, 해약 또는 해지시 수수료, 회비반환,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 서비스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제10조) ③ 외국현지법령 준수의무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현지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형사법령이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제11조). ④ 허위·과장된 표시나 광고금지 : 결혼중개업자는 거짓 고장되거나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나 이용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표시나 광고시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제12조). ⑤ 개인정보의 보호 : 결혼중개업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제13조). ⑥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업무제휴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는 계약서 작성, 외국현지법령의 준수,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개인정보의 보호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4조의 2). 또한 중개업 결격자, 겸업금지자와 업무제휴를 할 수 없다(제14조의 2 제3항). ⑦ 신상정보의 제공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각의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즉 혼인경력,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여부 포함), 직업,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그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이다(제10조의 2 제1항).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이어야 하고(동조 제2항), 신상정보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동조 제3항),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조 제4항). ⑧ 통·번역서비스의 제공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제10조의 3). ⑨ 기록보존의무 :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하며, 이용자나 상대방이 그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에 응해야 한다(제10조의 4) ⑩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등의 금지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제10조의 5).

넷째,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규정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일차적으로는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이다(제24조).

다섯째, 결혼중개업자의 결혼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다.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5조).

여섯째,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체가 법에 정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 시정명령(제17조), 영업정지(제18조), 폐쇄조치(제19조) 등을 취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 명이나 상호대여, 신고필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거짓·과장되거나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광고한 자, 이용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한 자,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조).

4. 검토

‘결혼중개업법’은 2007년 제정하고, 그 후 여러 학자들의 지적에 따라 잘못된 국제결혼의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결혼중개업의 관리를 위하여 3차례나 개정하였다. 특히 신상정보의 제공의무를 강화시키고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의무, 허위·과장광고 금지의무,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공시의무,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금지의무, 미성년자 소개 금지의무 등을 마련한 것은 인신매매적 혼인을 방지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은 나중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허위정보제공 등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등록의 정지 내지 취소규정만 두고 있는데 이러한 처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로, 결혼중개업자가 국제결혼을 중개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결혼 이주여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결혼중개라는 위계적 사슬 아래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

주여성이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들에 관해서는 장을 바꾸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제3절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1. 국적법

국적법에 의하면 결혼이주자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에는 일반귀화요건과 간이귀화요건이 있는데, 국제결혼 이주자의 경우에는 귀화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간이귀화요건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 국적을 바로 취득하는 ‘가족국적 동일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2004년까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어떤 사유로든 이혼을 하면 강제출국 대상자가 되었다. 2004년 이전의 국적법은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혼인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¹¹⁸⁾ 2004년, 인도주의적 요청에 따라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에서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거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인 경우에도 국적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였다.¹¹⁹⁾

118) 국적법(1997.12.13, 개정법률 제5431호) 제6조 제2항 제1호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제2호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119) 국적법(2004. 1.20, 개정법률 제7075호) 제6조 제2항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호 ‘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한 2005년 9월에는 ‘혼인파탄 귀책사유가 한국인에게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또 한국 국민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2007년 1월에는 국적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한국국민과 혼인한 후 그 혼인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이 한국인의 귀책사유 입증이 어려운 이주여성을 위하여 ‘공인된 여성 관련단체’¹²⁰⁾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국적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08. 4. 4.에 일부 개정된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부는 결혼이주자의 한국국적 취득 요건으로 한국어 필기시험 통과를 면제받기 위해 사회통합교육 이수 의무화 하고 있다.¹²¹⁾ 결혼이주자에 대하여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한 결과, 국어능력·한국사회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적응 현상은 국제결혼 2세에게 영향을 미쳐 언어능력의 취약함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이수해야 하는 시수는 250여 시간에 이른다.¹²²⁾

한편, 최근 개정된 국적법은 결혼이주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사회통합차원에서 우리 국적취득자에 대해서도 원국적 포기 의무 부담이 완화되어 제10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자에 대해서는 ‘외국국적 포기증명’ 방식 이외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도 인정하고 있다. 이로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도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제도적으로 외국인으로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했던 이전 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귀화허가 시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한국남성과 결혼한 후 한국인 남편이 사망하거나 실종, 또는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여성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반드

120) 이러한 공인된 여성관련단체로서, 가정폭력보호시설(57개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33개소), 이주여성긴급전화 1336센터(16개소) 등 197개 단체가 있다(<http://www.moj.go.kr>).

121) 제4조(귀화격격심사) ①영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호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사회통합교육 의무화와 관련된 제4조는 부칙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22) 법무부훈령 제683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참조.

시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¹²³⁾

2.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은 국제결혼에 따른 입출국과 체류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신분상 불안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국인 남편으로부터의 협박과 폭력을 감수해야만 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 여기에서 출입국관리법상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위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동법 제31조 제1항 본문).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거주자격(F-2)을 가질 수 있고, 거주(F-2)자격으로 일정기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게 되면 영주자격(F-5)을 가질 수 있다. 이들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없다. 이혼 등의 사유로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자녀양육, 시부모 부양 등 체류가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거주자격(F-2)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및 그의 미성년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거주자격(F-2)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거주자격(F-2)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자격(F-5)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체류자격 변경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에 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1항). 거주자격(F-2)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123) 1957년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은 혼인, 남편의 국적 변동, 이혼에 의한 기혼여성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서도 같은 취지의 선언을 하고 있다(이철우, “이중국적의 논리와 유형”, 「법과 사회」 제25호, 법과 사회이론학회, 2003.12, 139면; 이종수, “다문화사회와 국적”,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0.6, 54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이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이혼·별거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결혼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자격(F-5)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자격(F-5)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이혼·별거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①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성년이고, ②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③품행이 단정하고, ④대한민국의 풍습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서, ⑤거주자격(F-2)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자격(F-5)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자격(F-5)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2호).

3. 검토

국적법상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요건을 완화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거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인 경우에도 국적취득의 기회를 부여한 것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귀화신청시 한국인 남편을 동반출석하게 하거나 필수서류 중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어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여부가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여전히 신분불안과 더불어 가정폭력 및 혼인파탄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체류 연장 여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어서 결혼이주여성은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에게 예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한국인 남편은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협박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나중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국적법상 국적취득에 있어서나 출입국관리법상 국내체류기간 연장 등에 있어서 전적으로 남편에게 예속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제4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 입법 배경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이에 따른 외국인 노동인력 수요의 증가, 그리고 국제결혼 건수의 증가로 인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체류 유형 또한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주자, 난민 등으로 다양화되는 등 인구구성이 급격히 변화되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생겼다. 한편 외국인 관련 정책에 관하여 각 정부부처가 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책의 충돌·중복·부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법은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돕고, 외국인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에서 제정되었는데,¹²⁴⁾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기본적인 사항과 종합적·체계적인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¹²⁵⁾

124) 동법 제1조는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5) 대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사회통합에 관한 아시아 최초의 법제화’라고 할 수 있다(김기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국내 체류외국인 정책-”, 「저스티스」 제106호, 한국법학원, 2008, 228면).

2. 주요내용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제5장 보칙 등 5개 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 제1조는 이 법의 규율대상인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셋째,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규정이다(제5조 내지 제9조). 동 법은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③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¹²⁶⁾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가 된다.

넷째,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에 관한 규정이다(제10조 내지 제17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및 그의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26) 주민행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조상균·이승우·전진희, “다문화가정 지원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제1호, 전남대5-18연구소, 2008, 157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재한외국인, 영주권자 및 난민도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권자,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 및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다섯째,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8조 및 제19조)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 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행사를 개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외국인전담직원의 지명·교육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20조). 즉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인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기 위하여 외국인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검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장기체류 외국인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던 종래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외국인 정책의 종합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포함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와 인권향상을 위하여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되기도 한다.¹²⁷⁾ 이 법은 “그 명칭과 국가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

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대한외국인처우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적용대상을 합법적 체류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주무부처를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관리하는 등 국가법질서의 유지를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법무부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 법 규정 대부분이 프로그램적·선언적 규정이라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제5절 다문화가족 지원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착과정에서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법(제정 2008. 3. 21. 법률 제8937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최초의 법률인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즉 다문화가족의 한국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 제8조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긴급지원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36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주여성상담원이 직접 상담하고 경찰, 병원, 이주여성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¹²⁷⁾ 또한, 가정폭력 등 피해이주여성 및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상담, 의료, 법률, 출국 등을 지원하는 이주여성쉼터(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전국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등으로 혼자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이주여성의 거주와 직업훈련 등 자활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에 서울에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서울이주여성디딤터)’를 처음으로 개소하였다. 법 제12조와 관련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2년 3월 현재

127) 배병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1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4, 779면.

128) 2009년에는 수도권(수원), 충청권(대전), 전라권(광주), 경상권(부산)지역센터도 개소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16개시·도에 20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¹²⁹⁾

1. 제정취지 및 경위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 등 국가 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뿌리 깊은 ‘단일민족 의식’으로 인하여 다문화 가족의 생활 전반에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고착화시켜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¹³⁰⁾ 이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통합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3월에 제정되어 동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2007년 3월 고경화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주민 가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¹³¹⁾과 같은 해 5월 장향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안’¹³²⁾ 등 두 법안을 종합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두 법안은 사실상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라는 특성을 공유하며 내용상으로도 유사한 측면이 많아 두 법안을 종합하여 절충한 것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인 것이다.

129)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독립형	6	7	6	5	2	4	4	13	12	12	15	14	19	18	14	2	153
병합형	17	1	1	3	2	-	-	16	2	-	-	-	1	2	3	-	48
계	23	8	7	8	4	4	4	29	14	12	15	14	20	20	17	2	201

* 독립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독립적으로 지정받은 센터를 말하며, 병합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130)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1집, 한국법학회, 2008.8, 229면.

131) 고경화의원을 포함한 24인의 의원들은 제안의 이유로 최근 취업·결혼 등의 이유로 국내에 이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 및 부적응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이주민 가족들이 한국사회에 들어와 체류하고 귀환하기까지 그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일관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고경화의, “이주민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경화의원 홈페이지, 2007).

132) 장향숙 의원을 포함한 20인의 의원들은 제안이유로 국가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우리 사회가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변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단일민족의식’은 다인종다문화 가족의 생활전반에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고착화시키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정책 차원에서 예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장향숙 외,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장향숙의원 홈페이지, 2007).

2012년 2월 1일에 3차 개정이 되어 동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 주요 개정 이유이다.

2. 주요내용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정책의 주요대상자를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각 부처의 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통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다. 동법 제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규정이다. 동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에 관한 규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동법 제7조).

여섯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규정이다(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³⁾

일곱째,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덟째, 아동 보육 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언어능력 제고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도의 교육감은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홉째,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다(제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133)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긴급지원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36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주여성상담원이 직접 상담하고 경찰, 병원, 이주여성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수도권(수원), 충청권(대전), 전라권(광주), 경상권(부산)지역센터도 개소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등 피해이주여성 및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상담, 의료, 법률, 출국 등을 지원하는 이주여성쉼터(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전국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등으로 혼자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이주여성의 거주와 직업훈련 등 자활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에 서울에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서울이주여성디딤터)’를 처음으로 개소하였다.

열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다(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¹³⁴⁾

3. 검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몇 차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적용대상을 합법적 체류자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체류연장을 하지 못한 결혼 이주여성 등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법 규정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적·선언적 규정이라는 점, 그리고 다문화주의적 이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제6절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1. 입법취지 및 배경

2006년 10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¹³⁵⁾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

134)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문화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녀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센터의 인력확대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해 종사인력의 역량강화와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전국대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2년 3월 현재 전국 16개시·도에 201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135) 표준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00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¹³⁶⁾

2. 표준조례안의 주요내용

(1)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외국인¹³⁷⁾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3조).

(2)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이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제5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제4조 및 제6조 제2항).

(4)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거주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이다(제6조).

(5)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7조-제11조).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136)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를 지금까지 다루었던 법률 등과 동일한 차원에서 서술하는 것이 다소 문제는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표준조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 맞게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조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어 여기에서 같이 다루게 되었다.

137)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00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조례안 제2조 제2호).

(7)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 명예 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제14조, 제16조, 제17조).

3.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주요내용

2012년 5월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94개이며, 현재 입법예고된 것은 26개에 이른다.¹³⁸⁾ 이들 지원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내용이 거의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3조).

(2) 지원대상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 거주외국인 등 지원단체, 거주외국인단체이다(제5조 제1항)

(3) 도지사는 거주 외국인 등이 지역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제2항)

(4)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그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제5조 제2항).

(5)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제6조-제14조).

138) 현재 조례가 제정된 곳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나누어보면, 서울 11, 부산 8, 대구 6, 인천 4, 광주 3, 대전 2, 울산 2, 경기11, 강원 5, 충북 6, 충남 8, 전북 6, 전남 12, 경북 5, 경남 4, 제주 1, 합계 94개에 이르고 있으며, 입법 예고된 곳은 서울 3, 울산 1, 충남 1, 전남 1, 경북 1, 경남 15 등 26개이다(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참조).

(6) 도지사는 거주외국인 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제15조, 제16조)

(7)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 및 단체포상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다(제17조).

4. 검토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은 이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실정에 맞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보호대상을 합법적 체류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러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제정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거의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제7절 관련 법제의 한계

지금까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중에서 ‘결혼중개업법’,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련 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선,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 그리고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등의 적용대상이 합법적 체류자로 제한하고 있어서,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

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법 규정이 프로그램적·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어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주관부처가 법무부이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결혼중개업법 등은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처로 되어 있고,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부처로 되어 있는 등 주관부처가 다르므로 인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법률 대부분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시혜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법의 구체적인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장을 바꾸어 살펴보려 한다.

제4장 국제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제도의 생점과 과제

제1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과제

1. 한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은 극도로 상업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업체의 영세성, 정보제공의 부정확성, 제도적 규제시스템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의 중개방식에 의한 국제결혼은 한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매매적 결혼 또는 인신매매적 결혼이라고 비난받아 왔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가 될 소지가 있는 국제결혼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이를 방지할 정책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¹³⁹⁾ 그러나 한국 남성이 중개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국제결혼 자체가 남성의 욕구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중개업체가 주도하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침해는 결혼 후에도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를 조성하여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¹⁴⁰⁾

(1)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관리상 한계

우선, 현재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조직과 규모면에서 영세업체이며 비전문적 사업체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이 국제결혼업체들은 대부분이 개인 업체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업체의 절반 이

139) 유엔여성차별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을 규제하는 법이 마련된 것은 알지만, 착취와 인신매매가 될 소지가 있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결혼 가정에 가정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동 위원회는 외국인 여성들이 국제결혼중개업자, 인신매매자 및 배우자에 의한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가정책들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CEDAW/C/KOR/5와 CEDAW/C/KOR/6 참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에서의 성과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2009, 221면).

140) 장명선, 전계논문, 109면.

상이 자본금 4,000만원 이하여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개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조직과 규모 면에서 일정수준을 갖춘 업체만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전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직업교육 내지 의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란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권의식 등이 요구되므로 결혼중개업체에 종사하는 자들은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은 물론 인권의식 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2) 미등록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규제규정의 결여

국제결혼중개에 있어서는 미등록업체의 불법영업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 등록업체들은 대표 및 종사자에 대한 신원조회와 범죄사실조회 등 사전예방 절차를 거치나 미등록업체의 경우 일체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더라도 구제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상품화된 결혼중개업 자체가 인권침해적이지만 중개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인권침해적인 부분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부실한 신상정보제공에 대한 소극적 처벌규정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한국남성의 ‘지적’장애 사실을 결혼이주여성에게 전달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현장에서 종종 상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¹⁴¹⁾ 정신적 장애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불충분한 통역서비스와 대량·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중개시스템 하에서 은폐될 수밖에 없다.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허위정보제공 또는 정보의 은폐로 인한 피해는 부주의하게 결혼을 결심한 이주여성 개인의 탓으로 치부될 뿐이다. 이와 같은 국제결혼 알선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짓정보제공에 대하여 동법은 사후적으로 행정적인 규제장치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부과되는 ‘영업등록 취소’ 처분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회의적이다.

141) 소라미, 전제 “이주여성 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151면.

이 법이 제정된 후 가장 큰 맹점은 결혼중개행위가 합법적인 상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¹⁴²⁾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신상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¹⁴³⁾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위반 시 중개업체에게는 영업등록 취소를(동법 제18조 제1항), 당사자에게는 신상정보 상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6조 제2항). 당사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문제는 중개업체의 의무위반 시 영업취소 내지 영업정지만 있을 뿐 벌칙으로서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되는 규정이 없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4) 결혼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한계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동법 제25조), 이주여성이 법적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제출해야 하는데 국제결혼중개라는 위계적 사슬 아래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주여성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거나 결혼중개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결혼중개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이 국내 법적 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너무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2. 입법적 개선방안

142) 소라미, 상계논문, 151면.

143) 혼인경력,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정신질환 포함),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그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0조의 2).

(1)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관리시스템 강화

1)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전문성 확보

결혼중개업은 1973년 허가제에서 1993년 신고제로, 1999년 자유업으로 완화되었다가 2008년에 국내중개업은 신고제를, 국제중개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록제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허가제와는 달리 등록제는 요건만 갖추면 되고 행정청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제 도입취지는 첫째, 중개업체를 법적 테두리 내로 끌어들이어서 규율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국제결혼중개업체 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 경쟁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등록제는 대폭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화를 위해서 최저자본금에 의한 등록기준의 강화, 전문인력의 확보기준 강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최저자본금에 의한 등록기준 강화에 대하여는,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해외관련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들 대부분이 농어촌 거주자, 도시영세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인 점을 고려하면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은 필수적이고, 자본금기준을 강화하면 신규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난립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자본금의 규모는 해외를 상대로 하는 해외영업행태를 띠고 있는 해외영업자(6,000만원), 해외이주알선업자(1억원), 국제물류주선업자(3억원)를 고려하면 1억원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¹⁴⁴⁾

다음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의 전문인력 확보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는 전문지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므로 이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국제결혼종사자는 고도의 행정적인 실무지식이

144)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실태조사결과 자본금 5천만원 이하가 77.3%,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가 6.0%, 1억원 이상이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의 등록업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김두년, 전계 연구보고서, 174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이 분야의 자격증이나 교육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에게는 적어도 국제결혼 중개과정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제결혼중개사 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¹⁴⁵⁾

2)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국제결혼중개업자들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으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시로 중개업체에 대한 무작위 감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인신매매와 연관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규제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주와 관련한 국가들 간의 초국가적인 부서를 설치하고 서로 협조하며 결혼이주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민단체운동가, 변호인, 자원봉사자 등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무등록영업, 등록증 대여행위,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매 분기, 반기별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¹⁴⁶⁾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동향조사를 강화하며, 모범적 운영업체를 발굴·확산함으로써 업체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¹⁴⁷⁾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¹⁴⁸⁾

3) 비영리 국제결혼중개기관 설립 규정 신설 검토

상업적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난립으로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관행이 국내외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비영리 국제결혼중개기관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⁴⁹⁾ 농협중앙회는 2009년 10월 국제결혼중개

145) 국제결혼공인중개사제도에 대하여 자세히는, 전남표, 전계서, 74-76면 참조

146) 장명선, 전계논문, 122면에서는 지자체별로 분기별로 점검하고, 여성가족부-지자체 합동으로 반기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47) 일본에서는 결혼중개업체연맹 또는 연합회를 통하여 업계의 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일본의 나코도연맹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 이 연맹은 국제결혼이 50% 이상의 높은 이혼율을 보이는 것은 결국 중개업자의 자질과 중개과정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체 지침을 개발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다(설동훈임경택,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연구보고서), 여성가족부, 2006.12, 35-36면).

148) 일본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이 서비스 산업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검토되고 있는 인증제도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마크' 부여제도와 우량중개업체에 대한 동그라미 적(適)마크' 제도가 있는데, 이는 업계의 자율적인 자규제를 준수하는 우량중개업체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김두년 외, 전계 연구보고서, 180면).

업 등록을 하였고, 2010년 2월에는 한국에 있는 베트남여성문화센터(VWCC)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한국과 베트남 간의 케이더베이스 시스템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 전국의 농협지점과 단위조합망을 통하여 희망자를 신청받을 수 있으므로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기존 조합원의 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정보제공의 신뢰성이 높으므로 농협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국제결혼사업을 진행하면 농어촌 지역의 국제결혼중개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의 경우 2008년에 이민법 제59조를 개정하고, ‘재단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국제결혼중개업 허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상업적인 국제결혼중개업을 전면 폐지시키고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여금 국제결혼중개업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업적 국제결혼중개업을 폐지하고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위헌성의 문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오히려 농협과 같은 건전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국제결혼중개업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서비스의 질적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국제결혼 중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¹⁴⁹⁾

4) 주요 결혼이주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활동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관할권 문제도 큰 걸림돌이 된다. 이 문제는 국가간의 협약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처벌하거나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결혼 중개산업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 아시아 국가들, 즉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몽골 등이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의 Anti-Trafficking Protocol 등을 통해 인신매매와 국제결혼중개업체 산업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요 결혼상대국에 사전교육 및 상호 지원협력을 위하여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고 협의체를 신설하여 상설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국제결혼이민관은

149)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도 비영리 국제결혼중개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0.7.20).

150) 다만, 잘못된 국제결혼 중개관행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하여금 국제결혼을 알선하게 하는 것은 문제개선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현재 상업화된 영리업체들이 비영리민간단체의 형식을 빌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결혼중개를 알선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문자가 있는 국제결혼 중개행태를 국가나 나서서 지원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소라미, 전제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종합토론문)”, 180면).

결혼사증 업무지원, 현지 국제결혼 관련제도 및 실태조사, 국가 간 협력, 결혼이주자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그리고 국제결혼 관련 해외 불법행위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범법자를 각 본국에 통보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폴 회의 등을 통해 경찰과의 국제공조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¹⁵¹⁾

(2) 신상정보 제공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2010년 11월에 개정된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개인신상정보의 수집과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동법 제10조의 2).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의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한 후 양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하였고, 양 당사자가 신상정보확인서를 확인한 후 쌍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만 맞선을 주선하도록 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2005년의 ‘국제결혼중개업자 규제법(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2005)’을 통하여, 남성이용자에게 외국여성의 연락처를 제공하기 전에 먼저 미국남성의 정보를 외국여성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미국인 이용자의 범죄경력을 알기 위해 성범죄자공공등록소(Sex offender public registry)에 조회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외국인의 모국어로 번역해서 보내며,¹⁵²⁾ 가정폭력 및 다른 범죄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와 이용할 수 있는 자원(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적은 소책자를 제공한다. 또한 자신의 정보를 미국인 남성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외국여성에게서 받은 다음 미국인 남성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000달러 이상 25,000

151) 우리나라는 2007년에 주호치민 총영사관(베트남 호치민)과 주필리핀대사관(필리핀 마닐라)에 국제결혼 이민관을 파견한 적이 있다. 국제결혼 이민관은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관리, 국제결혼 관련 고충처리, 결혼이주자의 출국전 사전교육을 담당하여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남복현, 「다문화 가족의 이해」, 장서원, 2010, 342-345면).

152) 이와 관련된 정보는 주로 가정폭력 등 폭력관련 범죄 혹은 연쇄적인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등이다(권영호·지성우·강현철, 전계 연구보고서, 111면).

달러 이내의 벌금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Section 833(d)(3)(c)).

일본의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단행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¹⁵³⁾ 우리나라에 비하여 훨씬 상세한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자료열람과 맞선 신청을 하여 결혼에 합의하면 약혼합의서만을 교환하고 완전히 결혼이 성사된 후에 동침을 허용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¹⁵⁴⁾ 대만의 경우에는 이민법 제59조에 따라 2008년 7월에 ‘재단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국제결혼중개업 허가·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 규정 제17조에서는 재단 및 비영리법인이 결혼당사자를 포함한 계약서에 서명하면 양당사자 개인의 모든 정보에 관하여 건강상태, 가정환경, 결혼이력, 범죄기록, 재정상태(소득, 예금, 채무)를 당사자 동의하에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¹⁵⁵⁾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이를 지키기 어려운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¹⁵⁶⁾ 그러나 이러한 상대방의 신상정보는 향후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법적 의무로 한 것이므로, 오히려 이 의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¹⁵⁷⁾

현재 동법은 중개업체가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제10조의 2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12조에서 거짓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국제결혼중개업이 등록제로 되어 있어서, 영업을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등록하는 것이 쉬운 상황이므로 단순히 영업취소나 영업정지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에 서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153) 일본의 경우, 1976년의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2000년의 소비자계약법, 2003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방문판매, 약관규제, 청약철회, 정보보호 등의 규정을 국제결혼중개시 계약서에 반영하여 계약하고 있다(설동훈·임경택, 「일본의 국제결혼중개회사 관리체계 및 결혼 이민자 정착지원 정책연구」(연구보고서), 빈부격차차별위원회, 2005.12, 25-27면).

15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갈등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의 사례」(연구보고서), 2007, 131-132면.

155) 김두년, 전계 연구보고서, 47면.

156) 김두년, 상계 연구보고서, 166면.

157) 입법론 적으로는 단순히 신상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신상정보에 대한 공인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는데, 2012년 2월 개정법(2012년 8월 시행)에서는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하다.¹⁵⁸⁾

(3) 입증책임 전환규정 신설

결혼중개업법 제25조에서는 결혼중개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언어와 문화장벽이 있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중개업체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입증자료를 준비·제출하여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혼이주 여성들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주거나 결혼중개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⁵⁹⁾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이 비윤리적이거나 인권침해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에 의한 결혼은 젠더불평등을 전제로 인종적, 국가적 차별 및 편견 하에 행해지고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강하다. 국제결혼중개업은 가장 취약한 여성들을 결혼이라는 미끼로 착취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혼중개업법’이 이 부분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젠더불평등을 인식하고 이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보장을 통하여 안정적인 결혼생활과 사회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 결혼중개업법은 인신매매금지규정 신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하도록 하고 있지만,¹⁶⁰⁾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결혼중개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결혼 이주여성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거나 중개업체에 그 부담을 전환시키는 등의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158) 동지 : 장명선, 전개논문, 125면.

159)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경우에는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김두년, 전개 연구보고서, 170면).

160)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최근의 개정법은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동법 제10조의2 제4항).

(4)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금지를 위한 규정 신설

1) 국제결혼 예비배우자들의 사전교육실시 규정 신설

국제결혼을 원하는 대상자의 사전예비교육 실시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결혼하고자 하는 잠재적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10년 10월부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수요가 많은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 등)의 여성들에 대하여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결혼동거 사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¹⁶¹⁾ 즉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절차, 관련법률, 피해사례 및 정부의 결혼이주자 관련정책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출국하고자 하는 나라의 문화, 간단한 언어 등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중개업체에서 결혼을 중개함으로써 가족 간 경제적 문제 등 사전 갈등해소로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외국인 여성의 경우에도 한국에 입국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한국에 대한 기초언어와 문화이해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¹⁶²⁾

이러한 국제결혼 예비배우자에 대한 안내 프로그램의 정책도입은 최근 거듭 발생되고 있는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이 개입되는 시점은 현지 맞선과 혼인식, 신혼여행, 양국의 혼인신고까지 마친 이후인 비자발급단계이

161) 지난 2010년 10월 여성가족부는 베트남 여성연맹과 ‘국제결혼 건전화 및 여성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한국 입국전 사전정보 제공 프로그램 공동운영, 불법 결혼중개업체 단속강화, 정보교환 등 양국 국민간 국제결혼 건전화 관련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입국 전 사전정보프로그램에서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문화, 기초한국어 교육 등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베트남에 이어 필리핀, 몽골 등 3개국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0.10.19, 1면).

162) 현재는 3개국 4개소(몽골,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필리핀) 등에서 입국 전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정보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장명선, 전계 “결혼이민자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6면). 후일 이들 사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등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 자질이 높은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들에 대한 사전 기초교육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자는 자질이 높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도 현재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인력자격시험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김두년, 전계 연구보고서, 158면).

다. 법정혼인이 성립된 당사자들에게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비자발급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칫 헌법상 혼인·가정생활의 자유(헌법 제36조)와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할 위헌적 소지가 존재한다.¹⁶³⁾ 그러므로 이러한 사전교육프로그램은 혼인을 결정하기 이전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국제결혼 대상자의 연령제한

결혼중개업법은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관행을 규제하는데 소극적이다. 지금까지 상품화된 국제결혼이 인신매매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¹⁶⁴⁾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대만은 20세 이상의 여성만, 미국의 경우 18세 이상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을 예방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정 결혼중개업법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동법 제12조의 2 제1호), 매우 바람직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¹⁶⁵⁾ 그러나 이러한 금지의무의 위반에 대한 처벌은 겨우 중개업체에 대한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1항 18호).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과 더불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귀국비용을 지원하고 생계를 보장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조항을 동법에 포함해야하고,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을 뿌리 뽑고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¹⁶⁶⁾ 인신매매

163) 소라미,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종합토론문)”, 국가인권위원회·한국비교공법위원회, 2010.11, 181면.

164) 이를 위해서는, 유엔의 인신매매방지 관련국제협약, 즉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인신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ion,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11)를 비준하고, 이에 근거한 국내 ‘인신매매 방지법’을 만들어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규정과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하여는 형법, 노동법, 출입국관리법, 성매매방지법 등 관련법과 소관부처 기관에서 법집행과 관리감독으로 해결될 수 없는 피해자가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논의되고 있으며, 제1,2차 입법간담회가 2010.3.국회에서 개최되었다(장명선, 전개논문, 128면).

165) ‘결혼중개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12.30.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7.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있는데, 주요 개정사항으로, 인권침해적 국제결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18세 미만의 자 소개금지 외에, 단체맞선 및 맞선을 위한 집단기숙을 금지하고 있으며,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혼관련 서류의 보존의 의무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원 보유의무화,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개시토록 하고 있다.

방지 관련 국제협약¹⁶⁷⁾을 국내 비준하고 이에 근거한 국내 ‘인신매매방지법’을 만들어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¹⁶⁸⁾

3) 폭력피해이주여성 긴급지원 및 가정갈등예방지원 서비스 강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 및 보호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상담서비스 확대 및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등의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정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한국생활 안내 및 통번역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누리콜센터의 확대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¹⁶⁹⁾

제2절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의 한계와 과제

1. 한계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를 하고 있으며, 체류연장여부나 국적취득여부가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에게 달려있어서 예측적인 부부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법상 국적취득제도를 완화하고 있지만,

166)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박지영,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65면 참조.

167) U.N. 국제조직원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인신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ion,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11.

168) 동지 : 소라미, 전개 “이주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152면.

169) 다누리콜센터는 2011.6. 포스코의 후원으로 설립되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2011.12.말 현재)의 상담건수는 1만 건을 돌파하고 있다. 한국어를 비롯하여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타갈로그어(필리핀), 몽골어, 일본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10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자 중 50.4%인 5,281건이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한다. 상담내용별로는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문의가 61.9%, 다문화가족 내의 갈등에 대한 문의가 15.4%, 통역요청이 19.4%를 차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2.1.2).

실질적으로 귀화신청 후 최종 귀화허가통지까지는 통상 1년 반에서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실제로 약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외국인’신분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장기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으로부터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결혼 이주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에 따라 거주자격(F-2) 비자가 부여되는데, 거주비자에 부여되는 1회 체류기간은 1년이며, 기간종료 전에 반드시 체류연장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기간 내 연장을 신청하지 못하여 초과체류상태가 되면 이른바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전락되어 출입국으로부터 단속과 강제추방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말하자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취득 전까지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국내 체류하는 것이며 국적 취득 전에 이혼을 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불안정한 신분상태에 처해있다.

둘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귀화신청 서류접수 시에 반드시 한국인 남편이 함께 출석하게 강제함과 동시에 필수서류 중 하나로서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체류여부나 국적취득 여부가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부관계에 위계질서를 형성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및 혼인파탄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¹⁷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합법적인 국내체류 여부나 국적취득 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달려있는 한 가정폭력 등이 발생하여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신이 처한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 자신이 처한 문제적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본국으로 쫓겨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신분과 체류가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지 않는 한국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결단을 내리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의 경우에도 결혼이주여성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들

170) 권영호·지성우·강현철, 전계보고서, 135면.

이 산재해 있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 측에서 혼인의 파탄 사유가 한국인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언어가 서투르고 제도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가능성을 매우 적다. 물론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이 어려운 이주여성을 위하여 ‘공인된 여성 관련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국적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이 제도 또한 얼마나 실효적인지는 의문이다.¹⁷¹⁾

넷째,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의 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체류관리지침에 의하면,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유소멸 시까지 3개월씩 체류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 완료시까지 합법적인 국내체류는 보장되지만 이 시기에 발급되는 비자로는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과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할 때 국적법상 그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입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적법 제6조에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거주기간(원칙적으로 2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98년 국적법 개정으로 요구된 국내거주기간 요건에는 외형적으로는 남녀 차별적인 요소를 철폐한다는 목적이 강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

171) 기존에 폭력유무와 상해정도에 대한 진단서도 증거자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결혼 이민자 관련단체의 사실확인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언어소통이 어렵고 한국의 법체계 등 사회전반의 실정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이주여성들이 얼마만큼의 실효적인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다(최경옥, “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보호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정책세미나자료), 국가인권위원회·한국비교공법학회, 2010.11, 55면).

결혼을 막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위장결혼 단속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제결혼 가정을 2년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리는 것은 그 적정성과 합리성이 의심된다. 2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하여 국제결혼 가정에는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부부 간 협상과 타협을 불가능케 하여 가족 내 발생하는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위장결혼 단속’이라는 목적은 이후 국적 심사 과정의 실질화 및 위장결혼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 수사를 통하여 사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혼인과 동시에 국적취득 및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안정적 신분보장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국제결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가장 선결적인 지원 정책일 것이다.¹⁷²⁾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자녀양육권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움으로 혼인 중에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간에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양육권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면 국적법 제6조 제3호에 따른 간이귀화가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주여성들이 귀책사유 입증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렵다.¹⁷³⁾ 결국 이들 여성들은 양육권도 향유할 수 없고 국적도 취득할 수 없어 불안한 신분상태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강제 퇴거되는 경우에는 모자가 생이별을 해야 하는 비인도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인 결혼 후 2년이 지난 후 신고를 통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국적 신고일 당시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배우자 또한 프랑스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¹⁷⁴⁾ 그러나 혼인 전 또는 후에 자녀가 출생했다면 ‘결혼 후 1년’이라는 국내거주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프랑스 민법 제21조-2)고 한다.¹⁷⁵⁾ 국제결혼 이

172) 소라미, 전계 “이주여성 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157면.

173) 한국의 언어와 제도에 미숙하고,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2004년에 개정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조항에 따라 스스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한 후 국적신청을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일 것이다. 또한 내국인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도 여성에게 아이의 양육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현실에서 외국인이고 국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신설된 국적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소라미, 상계논문, 157면).

174) 이영주, 전계논문, 216면.

175) 광원섭, “이주민 통합 전략의 국가 간 다양성 비교: 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7면.

주여성의 경우 노동을 통한 이주와 달리 국내 법·제도적으로 ‘정주’가 허용·전제되어 있다는 점, 가족이라는 매우 친밀하고 사적인 공간으로 유입된다는 점을 고려해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신분 보장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나 귀화신청서류 접수 시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가 함께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및 필수서류 중 하나로서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¹⁷⁶⁾

셋째, 이혼에 의한 귀화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에게 불리한 제반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혼인의 파탄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언어나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에게는 가혹한 일이다. 특히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일부러 외출을 금지시키는 등 정신적 학대 등에 관해서는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¹⁷⁷⁾ 무엇보다 이러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 한국에서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체류가 불가능하여 자녀와 이별해야 하므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장기적이고 합법적인 체류권 보장이 필요하다.¹⁷⁸⁾

넷째, 이혼소송 중인 경우에는 국내체류는 가능하지만 취업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체류관리지침은 개정되어야 한다. 이혼소송 중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을 경제적으로 봉쇄하여 실질적으로 이혼소송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이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근로활동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176) 이 규정은 사기결혼(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평등해야 할 부부관계에 상하 위계질서가 생기게 하고, 한국인 남성의 우월의식을 고취시켜 여성을 비하하는 마음을 갖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하여 결혼이주여성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77) 계속 개선되어가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혜택을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직접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법률지원시스템 정비도 필수적이다. 현재도 법률구조공단에서 내국인의 가정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력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내국인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여성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기금을 형성하여 보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소라미, 전계 “이주여성 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157면).

178) 다만 혼인관계가 중단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영주자격(F-5) 부여대상자는 될 수 있다.

제3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쟁점과 과제

1. 적용대상

이 법은 적용대상을 합법적 한국체류 외국인 일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혼이주자와 그 자녀, 외국인근로자, 영주권자, 난민 모두 차별방지와 인권보호 그리고 한국사회에의 적응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차별 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한 태도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적용대상으로서의 재한외국인을 합법체류자에 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를 불법체류자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불법체류자의 정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외국인 체류질서 문란, 사회비용 및 갈등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¹⁷⁹⁾

불법체류자를 법의 보호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결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중대 국가정책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이 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국익을 고려하여 그 적용대상을 합법적 체류 외국인에 한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⁰⁾ 다만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여러 유형이 있으며 그 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인과 결혼 후 국적취득 전에 이혼하여 불법체류자로 된 결혼이주자, 불법체류자로서 한국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불법체류자로서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고 있는 자 등의 경우, 특히 이들 중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¹⁸¹⁾ 불법체류자 중에도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있다는 점을

179) 임인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검토보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7.2, 9면.

180) 이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를 재한외국인에 포함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체류하고 있는 합법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의욕을 감소시키고, 불법체류로 전락하게 하는 동인이 될 뿐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김기하, 전제논문, 232면).

181) 이정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이주민가족 지원 법률안에 대한 검토”, 「부산법조」 제25호, 부산

감안한다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종합적 정책과 법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일부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적절할 것이다.¹⁸²⁾

2. 주무부처

우선, 이법 제5조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가 외국인의 출입국·체류관리, 국적부여, 난민인정 등 포괄적인 외국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법무부장관을 하여금 외국인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한외국인의 보호정책, 특히 결혼이주민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을 출입국관리 업무의 연장 내지는 동일선상의 업무로 보아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및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특히 이주자 가족의 보호·지원업무는 국가 법질서의 유지를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법무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¹⁸³⁾ 법무부가 체류외국인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이외에 취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지원 등의 정책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이민청’과 같은 별도의 기관을 두어 그곳에서 관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⁸⁴⁾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외국인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이라고 하여 외국인 중 특히 결혼이주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법률이라 할 수 있는데, 양자 간의 관계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상위법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이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이다. 나중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두 법률의 내용이 상당히 중첩되어 있어서, 양부처의 업무가 상호간 중첩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주무부처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변호사회, 2008, 52면.

182) 조상균·이승우·전진희, 전계논문, 155면.

183) 이정민, 전계논문, 53면.

184) 이정민, 상계논문, 53면; 이승우, 전계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225면.

3. 실효성 부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제3장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 재한외국인 등에 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들이 이법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 대부분이 권고적 또는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즉 결혼이주자의 자녀를 비롯한 영주권자, 난민, 전문인력 등 외국인을 폭넓게 보호·지원한다고 하면서 그 실행을 담보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대한 인권옹호,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선언적 규정을 두는데 그치고 있다. 정책의 집행에 수반되는 예산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권고적·선언적 규정은 모두 지극히 당연한 교과서적 내용을 담고 있어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장식적 규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¹⁸⁵⁾

4. 지원기간의 지나친 단기화

법 제12조 제1항은 “국자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5조에서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원기간을 국적취득 후 3년이라는 단기로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자녀의 출산, 보육, 교육 등은 국적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다음에 오히려 이와 같은

185) 이 법을 발의할 당시 발의자인 정부는 비용추계서(費用推計書)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첫째 이법의 시행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과, 둘째 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처음부터 이법을 장식적 법률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이승우, 전제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226면).

지원 및 보호를 필요로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제한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¹⁸⁶⁾

제4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쟁점과 과제

1. 적용대상

우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정의규정은 법의 적용대상인 ‘다문화 가족’을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12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동법을 준용함으로써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혼에 이르지 못한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자녀가 없는 사실혼의 경우의 사실혼 배우자, 재혼에 있어서 혼인이주여성이 전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그 자녀 등 결혼 이주여성에 수반하는 가족, 한국국적의 혼혈인 가족 등은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¹⁸⁷⁾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합법적’ 체류자격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체류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고 초과체류 상태가 된 이주여성과 이주여성이 국적 취득 전에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후 출생한 이주아동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¹⁸⁸⁾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게도 동법의 적용대상을 확장하여야 한다.

186) 이정민, 전계논문, 54면; 조상균·이승우·전진희, 전계논문, 157면.

187) 정상우, 전계논문, 493면; 이승우, 전계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229면.

188) 김상찬·김유정, 전계논문, 335면.

2. 프로그램적·선언적 규정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구체성을 결여한 채 단지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프로그램적·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명칭에서 보는 것처럼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재한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이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법이라고 보고 있다.¹⁸⁹⁾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규정 내용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적·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의 성격상 차이가 없다고 비판되고 있다.¹⁹⁰⁾

이러한 점은 양법의 내용이 여러 사항에서 사실상 중복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제5조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행증진, 제6조의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과 한국어 등의 교육지원, 제7조의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8조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9조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제10조의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제13조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 실시, 제14조의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처우, 제16조의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규정 등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복규정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규정은 프로그램적·선언적 규정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책도입과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8조의 가정폭력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의 형태는 유형적·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무형의 언어적·경제적·성적 학대 또한 매우 심각한 일이다. 특히, 한국인 남편이 변심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악의적으로 유기하면서 일방적으로 협

189) 정상우, 전게논문, 494면에서는, ‘다문화가족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집행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승우, 전게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230면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건강기본법’ 제1조의 목적을 다문화가족에도 실현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의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구체적·개별법이라고 한다.

190) 강경필, “다문화가족지원 법안 검토보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7.11, 2면.

의이혼을 강요하는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버티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인 남편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협의이혼 요구에 동의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임신한 경우 낙태강요가 수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혼강요, 낙태강요, 악의적 유기, 인격적 모독, 감금,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이 실제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가정폭력의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상에 명문규정을 두어 무형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체류보장 및 경제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부여, 법률구조,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의 부여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주의의 이념 반영한 종합적 다문화정책 수립

이 법은 한국사회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문제, 특히 결혼이주자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사회 전반에서 드러나는 관련문제들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한 국가정책의 하나인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보다 종합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국한된 해결책 제시는 사실상 미봉책에 불과하다. 결혼이주여성 정책은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정책 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종합적인 다문화정책의 틀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이 법이 각각 서로 다른 주관부처의 총괄하에 이루어질 수 없다.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한 하나의 종합적인 정책의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결혼이주 여성 정책, 외국인 노동자 정책, 재한외국인 정책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¹⁹¹⁾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정책을 주관하는 법무부와 다문화가족 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¹⁹²⁾ 그리고 기타 지원을 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

191) 김원섭,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와 한국의 다문화정책-‘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민족연구」 제36호, 교양사회, 2008.12, 125면.

육관광부 등의 분산된 정책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는데,¹⁹³⁾ 외국의 경우처럼 다문화정책을 총괄 주관하는 부처 또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총괄부처의 지정과 이에 따른 지휘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¹⁹⁴⁾ 그렇지 않으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중복되거나 드러난 문제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주를 이루게 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이 아닌 개별문제의 해결에만 국한된 정책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¹⁹⁵⁾ 그러므로 이 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통합으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¹⁹⁶⁾

이 법의 내용은 주로 다문화 가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¹⁹⁷⁾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족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들의 한국화가 그 중심이 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정을 위해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지원이 다문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혜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문화적 다양성이 우리 사회를 보다 성숙한 사회가 되도록 기여하도록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적인 이념이 반영되고 목적 조항에도 명시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¹⁹⁸⁾

192) 정부부처가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되면서 2008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주관부처로 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가 사업의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0년 3월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다시 개편되면서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정책을 주관하고 있다.

193) 외국인정책 관련 주관부처 현황

구 분	관계 부처
외국인근로자	노동부, 중소기업청, 법무부 등
외국국적 동포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결혼이주자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유학생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
난민	UN, 법무부 등
관광, 연예인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투자자, 주재원	지식경제부, 법무부 등

194) 캐나다의 경우 1972년 11월에 다문화주의담당 장관이 임명되었고, 1973년 국무부 내에 다문화주의국이 설치되었다. 1991년 다문화주의국은 다문화주의 및 시민권부로 확대 독립되어 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보이고 있다(조정남,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교양사회, 2002, 346면).

195) 모선희 외,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연구」(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2008, 28면.

196) 두 법을 통합하고 이의 주관청으로 ‘이민청’ 또는 ‘다문화지원청’ 등을 설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 베트남 여성(Thach Thi Hoang Ngoc)의 죽음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청’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파이낸셜 뉴스 2010.7.29자 사회면).

197) 다문화정책은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되고 있다(정상우, 전개논문, 505면).

198) 이승우, 전개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231면.

제5절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의 쟁점과 과제

1. 보호대상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은 법 적용의 대상을 ‘합법’ 체류자로 한정하고 있다(동조례안 제5조). 사회통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거주외국인을 지원하고 거주외국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일관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여,¹⁹⁹⁾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등록·미등록을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인정해 온 것과는 상반되는 조치이다.²⁰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외국인 표준조례안과 이를 따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원대상을 ‘합법’체류자로만 한정하도록 하여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

또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은 보호대상으로서의 ‘거주외국인’을 “00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이렇게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고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만이 지자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 및 각종 행정혜택, 한국어 등 적응교육, 취업고충상담, 응급구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관내 90일 이상 거주’라고 하여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보호와 지원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였는지 모르나 외국인 문제의 중요성과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 규모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이점도 설득력이 없다. 기간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⁰¹⁾

199) 헌법재판소 1994.12.29, 93헌마120; 헌법재판소 2001.11.29, 99헌마494 등.

200) 김종세,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규범인식”, 「법학연구」 제45집, 한국법학회, 2012.2, 9면. 이주 여성에 대한 법적 지위에 관하여 자세히는, 표명환, “재한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8, 99면 이하 참조.

또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자’로 제한하는 경우 출산, 건강상의 이유 등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생계활동을 중단한 이주여성,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노부모 봉양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여성, 관내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아동,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미등록 이주여성 등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제도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²⁰²⁾

2. 자문위원회 구성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성되는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에 정작 당사자로서 당해 문제에 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당해 문제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외되어 있다(제7조 참조). 이는 외국인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파악한 결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대표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²⁰³⁾

3. 지역적 특성의 반영 미흡

표준조례안은 명칭 그대로 외국인지원과 관련한 표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각 시·도 및 시·군·구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지원 조례의 제정이 요청된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조례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특성이 거의 반영되지 아니하고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그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²⁰⁴⁾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201) 동지 : 조상균·이승우·전진희, 전계논문, 169면; 이승우, 전계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233면.

202) 소라미, 전계 “이주여성 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147면.

203) 조상균·이승우·전진희, 전계논문, 169면.

204) 이승우, 전계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234면.

제6절 정리

지금까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제도의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관련법제의 검토를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신장을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중개업법은 그동안의 많은 지적과 비판에 힘입어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혼중개업자의 책임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신매매적 혼인, 또는 사기적 혼인으로 인한 인권침해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 출신으로서 본국이 있는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을 택한 경우가 많아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이를 적절히 이용되고 있어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결혼과정에서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혼생활 과정까지 이어져 가정불화나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이혼까지 하게 되도록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개정 결혼중개업법에서도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결혼중개업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영업취소나 영업정지에 머무르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하지 않았음으로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인신매매적 결혼이나 사기적 결혼 금지만이 아니라, 국제결혼이 우리나라 결혼형태의 10%를 넘는 거의 일반적인 결혼형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입법론적 검토사항으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강화, 비영리 국제결혼중개기관 설립규정 신설, 배우자간 연령차 제한 규정 도입 등을 통한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강화, 신상정보제공의무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결혼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의 신설, 국제결혼 예비배우자들의 사전교육 실시규정 신설,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상의 국적취득 및 체류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이다. 국적법상 간이귀화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적취득제도가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적취득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기간이

2년이고 귀화신청 후 허가까지 통산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약 4년이라는 기간을 외국인신분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전에는 거주자격(F-2)비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에 부여되는 1회 체류기간이 1년이므로 매년 체류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체류기간 연장 시 반드시 남편이 동행하여 신원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적취득에 있어서도 남편이 동행하고 신원보증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고 있어서 만약 남편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때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리는 신분상 불안정한 처지로 살아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인 남편은 이를 결혼이주여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결혼한 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게 되는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에게 결혼과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최소한 5년 정도의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이혼, 별거 등으로 강제출국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등을 살펴보면, 그 지원대상을 합법적 체류자격 여부 및 생계활동의 유무, 혼인생활 지속여부, 한국인 자녀 출산여부 등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나, 불법체류자를 일률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한국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미등록 이주여성 등이 배제되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법률과 조례 등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통합되어야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이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이며,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관련 주무부처는 노동부나 중소기업청 등이며, 관광 난민관련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으로서 재한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무부처가 분산된 정책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합하고 그 주무부처도 ‘이민청’ 또는 ‘다문화지원청(가족청)’ 등을 신설하여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한 법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 대부분이 프로그램적·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그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여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특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의 지원기간이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바, 오히려 이 같은 지원은 국적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다음에 더 필요할 것이므로 그 지원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보호대상을 ‘합법적 체류자’로서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고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주 초기에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관내 90일 이상 거주’해야 하는 제한은 합리성이 없으며, 특히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출산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우, 가사노동, 자녀양육, 노부모봉양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이혼소송중인 여성 등은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규제는 합리성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일곱째,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었거나 확대설치 중에 있지만,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사자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여덟째,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받는 인권침해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 단일민족을 외치는 순수혈통주의 중시 풍토로 인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나 그 자녀들에 대하여 편견과 차별을 가지게 됨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입국 전에 한국어나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생소하다. 한국말을 하지 못하거나 서툴러서 심리적·정신적으로 위축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가정불화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침해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갈등적 상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대만에서는 자국

민과 똑같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서비스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포함하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이 거의 선언적·프로그램적 규정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지제도, 취업알선, 보건·건강부분에의 서비스 강화, 한국사회에의 조기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나아가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제7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외적인 방안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족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약자로서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장기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결혼중개업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등의 제정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초기단계에 있는 현재의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아갈 다문화사회의 모델(이상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에서의 다문화관련 정책과 법제가 지나치게 동화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든가,²⁰⁵⁾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에 대하여 가족유지에 치중한 나머지 인권보호에 소홀하다등가

20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그리고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모두 사회통합을 그 목적으로 내걸고 있으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사회에의 적응 지원을 통한 동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이들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위한 실효적 규정은 위 법률들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정상우, 전제논문, 499면)

하는 점에 대하여 좀 더 치열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문제는 여성, 가족, 국내외 산업구조, 인권, 세계화, 국민정서 등 복잡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해결을 위한 접근에 있어서도 종합적, 체계적,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은 보호·지원하되 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단순히 한국사회에의 적응과 동화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존중하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보편적 인권의 보호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 즉 다문화주의가 국제결혼 이주여성, 나아가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단순한 배려·지원·이해·수용이 아니라 교류와 협력·공존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 모두가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²⁰⁶⁾

이러한 일련의 법률들을 제정하여 재한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으로 진정한 다문화사회가 이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재한외국인’이나 ‘거주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주민’으로 인정하고,²⁰⁷⁾ 그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사회적 실체로서 인정함으로써 현재까지의 동화 내지 배제의 정책에서 공존이라는 발전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결혼중개업법’의 제정으로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악덕 중개업체에게 피해를 입고 혼인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많다. 비영리법인 중개업체의 육성 지원, 국제결혼정보원의 설립, 국제결혼지원센터의 지정·지원, 국제결혼 이민관의 부활 여러 가지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 제도들이 시행되면 보다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

206) 김원섭, 전계논문, 126면.

207) 최근 ‘담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거주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바꾸어 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주민등록법)를 가지고 있는 자이다(동법 제12조). 그리고 주민등록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함)를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외국인’은 ‘주민’이 아니다. ‘외국인주민’이란 외국인으로서 우리의 사회적 이웃 주민으로 해석할 수 있다(최경욱, 전계논문, 71면).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며, 또한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남성들의 인식 또한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돈을 주고 신부를 사왔으니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결혼관이 남았다면 아무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육성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낱의 꿈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다문화가정의 지원이나 사회통합을 위한 관련 법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 못지않게, 국제결혼을 원하거나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남성이나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인식이 변화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5장 결 론

국제결혼은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인종, 문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인권침해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세계화 속에서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하여 이주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전체결혼의 11%가 넘는 일반적인 결혼형태가 되고 있으며, 2011년 말 현재 18만명에 이르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초·중·고에 재학하는 자녀수만도 2011년 현재 30,040명이나 되고 있으며, 여기에 영유아까지 포함되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는 바, 이들에 대한 언어, 교육문제 등 사회통합적 의미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된다

미국무부의 국제인신매매보고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지적, 그리고 유엔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집중된 국제화된 이슈인 것이다. 한 사회의 인권지수가 그 나라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의 인권실태로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야말로 ‘이주민’으로, ‘여성’으로, ‘빈곤층’으로 겹겹으로 차별받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우리사회 인권의 잣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시각에 앞서 우리 헌법의 이념과 기본권조항은 외국인 인권보호를 예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들도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법’ 등을 제정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속도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대책은 단편적이고 추상적인데 머물고 있는 측면이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혼중개업법’,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이주여

성 인권보호제도의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국제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중개업법은 그동안의 많은 지적과 비판에 힘입어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혼중개업자의 책임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법을 개정하여,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강화, 비영리 국제결혼중개기관 설립규정 신설, 배우자간 연령차 제한 규정 도입, 신상정보 제공의무 위반시 중개업자의 처벌규정 강화, 결혼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의 신설, 국제결혼 예비배우자들의 사전교육 실시규정 신설,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상의 국적취득 및 체류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이다. 체류기간 연장 시 또는 국적취득시 반드시 남편이 동행하여 신원보증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에게 결혼과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최소한 5년 정도의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이혼, 별거 등으로 강제출국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등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일률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한국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미등록 이주여성 등이 배제되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법률과 조례 등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통합되어야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합하고 그 주무부처도 ‘이민청’ 또는 ‘다문화지원청(가족청)’ 등을 신설하여 통폐합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상의 지원기간이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바, 오히려 이 같은 지원은 국적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다음에 더 필요할 것이므로 그 지원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프로그램적·선언적 규정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필수적인 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여섯째,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의 보호대상을 ‘합법적 체류자’로서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고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일곱째,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었거나 확대설치 중에 있지만,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사자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여덟째, 사회적 차원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나 그 자녀들에 대하여 편견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 이들의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지제도, 취업알선, 보건·건강부분에의 서비스 강화, 한국사회에의 조기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나아가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사회와 우리 법규범이 지향하고 있는 ‘다문화간 상호 존중과 지원’을 과연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같은 이주자의 지위가 지금처럼 최하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더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적·선언적 규정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의 주류로서 진출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등에 대한 교육의 기회는 물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에서의 성과와 과제」, 2009.
- 권영호·지성우·강현철,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정관련법에 대한 입법평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9.9.
- 김두년 외,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방안(연구보고서)」, 여성가족부, 2010.12.
- 남복현, 「다문화 가족의 이해」, 장서원, 2010.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여성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 모선희 외,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연구(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2008.
- 보건복지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 2006.9.
- 보건복지부,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보고서」, 2009.
- 설동훈 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2005.
- 설동훈·임경택,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연구보고서), 여성가족부, 2006.12.
- 설동훈·임경택, 「일본의 국제결혼중개회사 관리체계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정책 연구(연구보고서)」, 빈부격차차별위원회, 2005.12.
- 장명선, 「서울시 다문화가족실태 및 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8.
- 전남표, 「국제결혼학개론」, 도서출판 문예림, 2008.
- 조정남,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교양사회, 2002.
- 창원여성의전화, 「다문화가정의 정책적 복지욕구조사」, 2006.
- 최은실 외,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효율화방안 마련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확보를 위한

소비실태연구」(연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2009.8.

한건수·설동훈,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연구(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2006.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갈등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의 사례(연구보고서)」, 2007.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실태조사」, 2010.

2. 논문

강경필, “다문화가족지원 법안 검토보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7.11.

곽원섭, “이주민 통합 전략의 국가 간 다양성 비교 : 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권미주,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이 기지는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법률적 과제”, 「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 2010.5.

김기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국내 체류외국인 정책-”, 「저스티스」 제106호, 한국법학원, 2008.

김상찬·김유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제43집, 한국법학회, 2011.8.

김오열, “다문화 지역사회와 농촌이주여성 더불어 살아가기-홍성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상담사례 발표자료」, 홍성YMCA, 2010.9.

김원섭,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와 한국의 다문화정책-‘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민족연구」 제36호, 교양사회, 2008.12.

김재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가족법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8.3.

김종세,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규범인식”, 「법학연구」 제45집, 한국법학회, 2012.2.

-----, “다문화가족의 의의와 규범적 근거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37집, 한국법학회, 2010.2.

문옥희, “외국인 여성 실태조사 및 사회지지체계 조사결과 분석내용”, 「광주전남지

- 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광주가정폭력상담소, 2004.12.
- 박지영,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8.
- 배병호,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1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4.
- 소라미, “정부의 탈법적인 국제결혼중개방지를 위한 정책검토”, 「‘정부의 결혼이민
자 가족정책 다시보기’ 토론회 자료집」, 2006.6.
-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 「국제결혼 이주여성,
쟁점과 전망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2007.11.
- ,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종합토론문)”, 국가인권위원회·한국비교공
법위원회, 2010.11.
- , “이주여성 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이주분야 국제조약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한 활동가 워크숍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9.11.
- 유의정·조규범·조주은,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09.
- 윤태순, “중·한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가족법의 문제 : 연변조선족의 한·중 ‘가장
혼인’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8.3.
-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1집, 한국법학회, 2008.8.
-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제38집 제2호, 한국사회학회, 2004.
- 이승우,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가족법연구」, 제23권 제
3호, 한국가족법학회, 2009.11.
- , “혼인이주여성의 지위와 법적 문제”, 「서울법학」, 제16권 제1호, 서울시립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8.
- 이정민,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이주민가족 지원 법률안에 대한 검토”, 「부산
법조」 제25호, 부산지방변호사회, 2008.5.
- 이종수, “다문화사회와 국적”,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0.6.
- 이철우, “이중국적의 논리와 유형”, 「법과 사회」 제25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3.12.
- 임인규,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검토보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7.2.

- 장명선, “결혼이민자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 (한국비교공법학회·국가인권위원회 공동세미나발표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0.11.
- 전제철, “다문화 법교육의 가능성”, 「법과 인권교육연구」 제5권 제1호, 법과인권교육학회, 2010.6.
- 정상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26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3.
- 조상균·이승우·전진희, “다문화가정 지원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제1호, 전남대5·18연구소, 2008.
- 최경옥, “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보호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정책세미나자료), 국가인권위원회·한국비교공법학회, 2010.11.
- 표명환, “재한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8.
- 한건수,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제39집 제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6.
- 한국염, “이주여성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사회학적 분석”, 「이주여성인권센터3주년기념 심포지엄자료집」, 한국여성인권센터, 2004.
- ,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 인권보호의 과제”, 「정책간담회주제발표자료」, 국회도서관, 2006.12.
- Allison Lee, 매매혼적 국제결혼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시아 이주여성전략회의 자료, 2006.
- N. Pipper & M. Roces(ed.),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Rowman & Littlefield Pub., N.Y., 2003.
- Ralph Jennings, Taiwan Men Seek Mail-Order Brides from Vietnam, Reuters, May 5, 2007.

<ABSTRACT>

Research on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ion Women's Human Rights Protection

International Marriage is the joining of a man and woman with nationalities of different countries. Their race, culture and language differ so infringements on civil liberties can take various forms. When women from countries with relatively low living standards immigrate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the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can be even worse.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number of migrant woman due to international marriages increased dramatically after 2000, and currently more than 11% of all marriages are international marriages. The total number of marriage immigrants at the end of 2011 is 180,00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were recorded at 30,040 in the year 2011. If infants are to be counted, the number is projected to be much greater. I think it is imminently important that there are social policies protecting them from any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e difference related difficulties immigrants may run into during their daily lives.

According to the US State Department's Report on International Kidnappings, the U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s observations and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s suggestions, South Korea's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Immigration problem is no longer a domestic issue, but an issu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following. If one country's human rights issues can be measured by how the most discriminated class or race is treated,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are truly the human right measuring stick of Korea because they are viewed as "immigrants", "women", and "poor". In accordance to this, Korea's congress legislated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Act on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Agency", and is making effort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However because the number of immigrant women is increasing so dramatically, these efforts are usually short lived and abstract.

Taking this into account, this report contains the current state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also through reviewing "Act on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Agency", "Law on Nationality and Immigration",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and "Proposed Ordinance to Support Resident Aliens", which are laws that directly impact their human rights, the report examines the issues and goals that need to be addressed regarding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ion law. The following are 8 proposals to improve the legislations regarding their human rights.

First, there have been many improvements in the process regarding Marriage Brokerage Agencies due to much pointing out of the problems and critique; however, the liability of Marriage Brokerage Agencies remains very low. Therefore the current legislation should be amended to reflect the review of Marriage Brokerage Agency registration standards being tightened, a non-profit Marriage Brokerage Agency Managing Foundation being chartered, and so that the law implements a maximum age difference restric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increased maximum punishment of Marriage Brokerage Agencies in the case of violating personal information sharing requirements, and a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for soon-to-be international wives, and strengthened laws and increased punishment for violating international kidnapping marriage laws etc.

Second, there are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cess of immigration and obtaining South Korean permanent residency and citizenship. The current law that requires immigrants to request legal resident period extensions or citizenship with the personal guarantee of their husbands must be changed. To ensure the safe stay of immigrant wives, they should be granted permanent residency or a minimum of 5 years stay at the same time a marriage license is issued. This gives them an opportunity to avoid domestic violence etc marriage problems without becoming an illegal alien due to divorce or marital separation.

Third,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and "Proposed Ordinance to Support Resident Aliens" indiscriminately excludes illegal aliens and therefore alienates kidnapping victim immigrant wives,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unregistered immigrant women who are supporting children - some of the groups that need the most protection. The laws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them.

Fourth, the Ministry Department that overseas Multicultural Families policies, including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should be consolidated.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and "Proposed Ordinance to Support Resident Aliens" should be combined into one law and overseen by a newly founded Immigration Department 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Department (Family Department).

Fifth, the "Proposed Ordinance to Support Resident Aliens"'s support duration is up to 3 years after acquiring citizenship. However, in reality, more support is needed

during the period of after 3 years of obtaining citizenship so the duration should be extended. Also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instead of being a declaratory law, should be amended with more detailed and essential clauses that protect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Sixth, the eligible status to request and be granted support as a resident alien should be changed from the current "legal resident who has resided for longer than 90 days and who is engaged in making a living" because it does not withstand practical reason.

Seventh, it is necessary to setup a self-support support foundation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Currently in accordance with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the Immediate Support Center for Migrant Women, Migrants Women for Women and Migrant Women Self Support Center are operating and expanding, but these support networks are limited and temporary in their relief. There should be more extensive and essential support and policy to assist the victims to work out their problems in a safe and stable environment.

Eight, our society must move past prejudices and discriminatory actions against 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Their must be welfare policies put into place to guarantee the safe and stable lives of these residents. Job placement programs, medical and health support services need to be extended as well as programs that help adjust to life in South Korea, support for children's school relocation, and further efforts and programs should be made by society as a whole to enlighten society's views on our migrant residents.

While examini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roblems, I feel that it is necessary to reflect upon, in a multifaceted capacity, how far our legislations and society has gone to achieve our society's values and goals in providing "Multicultural Respect and Support". If South Korea is to transform into a truly robust multicultural society, we must prevent migrants such as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Immigrants from being stuck in our society's lowest rung of social class. Specific polici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must be made, and instead of programmatic and declaratory policies, we need to further extend realistic support and opportunities so that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can play a major role in our economy not only through language, culture and education related opportunities, but also with the expansion and support of job placement programs and opportunities that give them the ability to independently support themselves.